○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100%)
○ 대　　상 : 시·군 급성감염병 관련공무원 및 보건교사 등
○ 내　　용 : 감염병관리사업 추진방향 및 분야별 수행사항 등
-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배포

4. 시·군 검사요원 교육

○ 기　　간 : 2~4월 또는 11~12월
○ 주　　관 : 도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보건소 검사요원
○ 내　　용 : 장내세균, 식중독 등 검사 및 정도관리, 신종감염병 관련

5.「기생충감염병」 예방사업

○ 기　　간 : 연중
○ 방　　법 : 간흡충 감염률이 높은 강가 등 취약지역 및 어린이를 중심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행정사항 : 기생충 검사실적(연보) 익년도 1월 5일까지 제출
※간흡충 퇴치사업 수행기관 :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6.「범국민 손 씻기 운동」 확대 추진

○ 목　　적 : 손 씻기를 통한 감염병 전파과정 차단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깨끗한 손 씻기 생활화로 감염병 감소
○ 방　　법 :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주요내용
-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시설 우선 사업 전개
  · 올바른 손 씻기 시범 및 반복 교육
  · 시청각 교재 및 손 세정 검사기 등 체험기구 활용
- 올바른 손 씻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언론 등 홍보 강화
- 손 씻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및 손소독제 배부

1-5.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생물테러 발생시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정확한 대응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상황별로 신속·정확한 대응
○ 생물테러감염병 조기인지를 위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운영

□ 생물테러 감염병

종류/병원체	특 성
탄저 (Anthrax)	•탄저균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 •감염경로에 따라 장탄저, 폐탄저, 피부탄저로 구분하며 사람간 전파는 불가능
두창 (Smallpox)	•두창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진성질환 •전파경로는 호흡기전파 및 수포액, 타액, 호흡기분비물 등에 의한 직접전파 가능
야토병 (Tularemia)	•야토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통상 진드기 등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
페스트 (Plaque)	•페스트균 감염에 의한 급성 감염병 •호흡기전파 가능 통상 감염성 비말이나 쥐벼룩에 의하여 전파
보툴리눔독소증 (Botulism)	•혐기성 아포형성 간균에 의해 생성된 보툴리눔 독소에 의한 마비성 질환
바이러스성 출혈열 (Viralhemorrhagic fever)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에볼라, 라싸 마버그출혈열 등으로 구분

※ 생물테러

-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위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생물테러 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

□ 생물테러 위기경보 수준

단 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Blue)	○국제 정세 불안으로 테러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 ○아국 동맹국가 대상 테러 빈발로 영향 우려 ○ 이중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상 징후 발생 없음	징후감시 활동
주의(Yellow)	○이중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상 징후 발생 ○국내 "백색가루 소동" 등 사회불안현상 발생 ○내국대상 테러 관련 첩보 입수 ○국제테러조직 관계자 국내잠입 기도 징후 포착 ○테러빈발 국가에 내국인 대규모 상주·파견	협조체계 가동
경계(Orange)	○이상 징후 발생관련 역학조사 결과 생물테러 의심사례발생 ○국내 '백색가루 소동'의 빈번한 발생 ○국외에서 내국인 대상 생물테러 감행 확인 ○국내에서 타 유형의 테러 발생	대비계획 점검
심각(Red)	○국내에서 생물테러 의심 병원체 분리 및 확진 ○국내에서 생물테러 의사환자 발생 ○백색가루 신속진단결과 '양성' 판정 ○국제테러조직이 국내에 생물테러를 감행했다고 공언 ○국내에서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 도난·강탈 사건 발생	대응태세 돌입

□ 생물테러 대응조직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
(본부장 : 차관)
◎ 운영: '심각단계'경보 발령시

- ○ 총괄점검지원반> 반장 : 기획조정실장
- ○ 보건대책반> 반장 : 공공보건정책관
- ○ 의료·식품·의약품 대책반> 반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 ○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반> 반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책반
(반장 : 감염병관리센터장)
◎ 운영 : 생물테러 이상징후 인지시 및 발생시

- ○ 대책팀> 팀장 : 생물테러대응과장
- ○ 검역지원팀> 팀장 : 검역지원과장
- ○ 역학조사팀> 팀장 : 역학조사과장
- ○ 감시팀> 팀장 : 감염병감시과장
- ○ 생물안전관리팀> 팀장 : 생물안전관리팀
- ○ 미생물탐지팀> 팀장 : 병원체방어연구과장

도 생물테러대책반
(반장 : 보건복지국장)
◎ 운영 : 생물테러 사건 발생시

- ○ 대책팀> 팀장 : 보건정책과장
- ○ 역학조사팀> 팀장 : 질병관리팀장
- ○ 감시팀> 팀장 : 건강증진팀장
- ○ 미생물탐지팀> 팀장 : 보환연 미생물과장

시·군 생물테러대책반
(반장 : 부시장, 부군수)
◎ 운영 : 생물테러 사건 발생시

- ○ 대책팀> 팀장 : 보건소장
- ○ 감시팀> 팀장 : 주무팀(계)장
- ○ 역학조사팀> 팀장 : 예방의약계장
- ○ 미생물탐지팀> 팀장 : 건강관리계장

□ 감 시

가. 생물테러 의심사례(백색가루 등)의 발생·처리 현황 감시

○보고내용

-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 처리 현황
- 생물테러 관련 민원 발생 · 처리 현황

○보고체계 : 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국정원 등 유관기관

○보고방법

- 평상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일보고
- 백색가루 소동 또는 의심우편물 신고 · 접수시
  - 발생즉시 유선보고, 사례조사 후 상황보고, 검사 후 결과보고
- 생물테러감염병 폭로자 및 접촉자 보고 · 접수시
  - 발생즉시 유선보고, 사례조사 후 상황보고, 검사 후 결과보고

나.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보고체계 : 지정응급의료기관→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

○지정의료기관

- 충북대병원, 청주성모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운영비 지원 : 11,880천원

○ 감시대상 증후군 및 감시대상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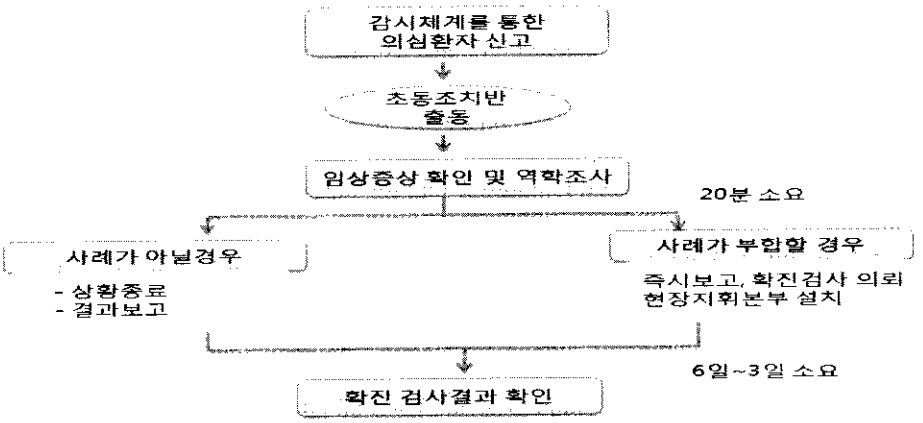
감시대상 증후군	감시 대상질병	
	생물테러 감염병	일반감염병
급성발진증후군	두창	-
급성신경증후군	보툴리눔독소증	-
급성출혈열증후군	에볼라열	-
	라싸열	-
	마버그열	-
급성호흡기증후군	탄저, 페스트, 야토병	인플루엔자, 사스
급성설사증후군	-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수인성 감염병

* 생물테러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어떤 질병이 생물테러감염병으로 확진되기 전에 환자의 임상적 상태 증상 혹은 증세에 근거하여 응급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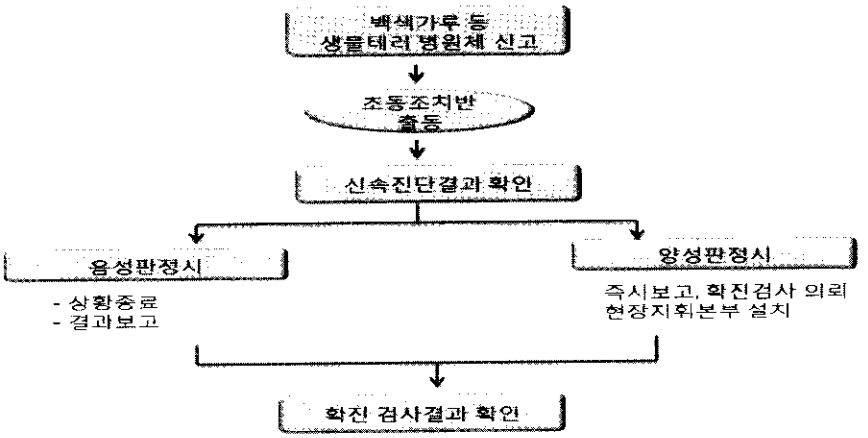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일일보고 : 매일 오전 10시
- 생물테러감시 대상 증후군 발생시 보건소에 즉시 유선신고

○ 의심환자 인지시 조치사항 체계도



□ 생물테러 의심사건 발생시 대응

○ 생물테러 의심물질 인지시 조치사항 체계도



○ 생물테러 사건(의심) 발생시 합동조사반, 초동조치팀 구성

- 합동조사반 : 군, 소방, 경찰, 보건소, 역학조사관, 민간전문가 등
- 초동조치반 : 경찰, 소방, 보건/검역 (팀장 : 경찰서장)

○ 생물테러 의심사건 발생시 대응절차

시점	초동대응기관	대응조치
사건신고 접수	경찰/소방	-사건발생에 따른 **신고 접수**(6하원칙에 따른 상황접수) -**관할 보건소** 및 타 초동대응기관에 즉시 **상황전파**
	보건	-상황접수 및 **시·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상황보고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송부 ※보건소에 접수된 경우, 초동대응기관에 전파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 연락처 - 전화 : 043-719-7777 / Fax : 043-719-7239
1시간 이내	경찰/소방/보건	-초동조치반 구성 및 **즉시 출동** ※초동조치반장 : 경찰서장 ※보건의 경우, **신고접수 1시간 이내 도착**
사건현장 도착	경찰	-**폴리스라인설치** -현장 보존 및 치안 유지 -현장에 있는 주민·차량 통제 -생물테러 **정황조사 실시**
	소방	-**환경검체 채취** 후, 3중용기에 밀봉하여 보건전달 -**환경제독**(필요시, 폭로자 제독 협조)
2시간 이내	보건	-**생물테러병원체 및 독소 다중탐지키트 검사** **※질병관리본부로 검사결과(양/음성여부) 즉시 전파** **(신고접수 2시간 이내에 완료)** -폭로자 파악 및 제독(소독) -소방에게 받은 환경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 **(검체이송기관: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042)870-3411**
후속조치	보건	- **검체의뢰서 작성**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요청 관련 공문발송
	보건환경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로 **검사결과 공문발송**
6시간 이내	시·도	-사건관련사항 취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발생경위, 조치내용 등 **상황보고(신고접수 6시간 이내 완료)**

□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훈련

○ 생물테러 장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 '14년 7~9월

○ 예 산 : 1,400천원

□ 생물테러 일일보고

○ 매일 오전 11시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으로 웹보고

1-6. 조류인플루엔자 관리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인체감염 예방 및 환자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인적·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 추진방침

○ AI 발생 및 인체감염 예방

○ AI 국내 발생 시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

○ 해외 인체감염 발생 시 국내유입 감시 및 차단

□ 추진계획 (AI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 AI 인체감염 대책반

○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 **(반장 : 보건정책과장)**

- 도내 발생지역 업무 총괄, 관계부처(지역 의사회) 업무협의
- 정보수집 및 분석, 일일상황 파악
- 항바이러스제제 등 물품구입 및 확보, 언론대응
- 비상연락망 운영 및 대주민 교육·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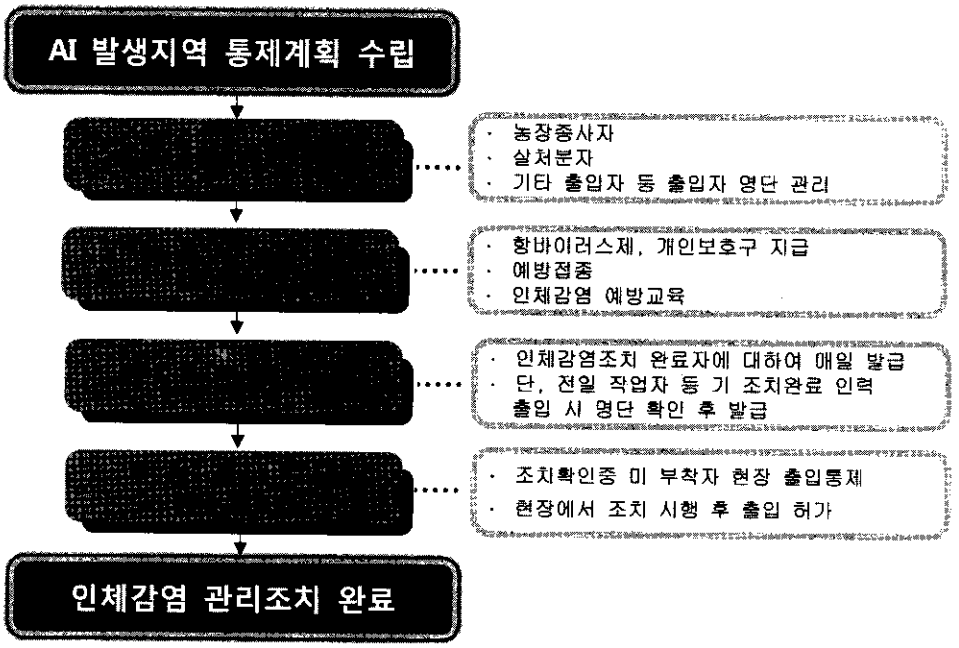
○ 시·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 **(반장 : 보건소장)**

- 발생지역 업무 총괄 및 조정, 관계부처 업무협의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유지
- 발생지역 고위험군 관리 및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
- 상담 및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접수
- 개인보호구 및 항바이러스제제 구입 및 조달 등 **<별표 참조>**

2. 단계별 조치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참고

3. 고위험군 관리반

○ 고위험군 관리반 주요 현장 조치



○ 대상군별 구분

구 분		고위험군 구분
대 상	• 농장 종사자	• 발생농장 종사자, 관련지역 종사자 및 살처분지역 내에 농장을 운영하는 자, 조류사육자
	• 살처분 참여자	• 살처분 대상 동물의 사체 소각 또는 매몰작업 등 관련 업무에 투입된 자 • 중장비 기사 및 오수처리자 등 포함 예) 인력업체 살처분자, 매몰 작업자 등
	• 대응요원	• 감염원 원인 분석 및 정밀검사를 위해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감염병 원인체 유입 및 전파 경로 등을 조사하는 자 • 발생지역 가금류 모니터링, 살처분관리, 소독 및 방역업무, 인체감염 예방활동 등을 하는 자 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군·구 축산 및 보건관계관
	• 기타 :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반드시 살처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투입하고, 투입 인력은 가축방역관과 보건소장이 공동으로 관리함	

○ 대상군별 상세조치 내용

<table>
<tr><th rowspan="2">대구분</th><th rowspan="2">소구분</th><th rowspan="2">관리조사</th><th colspan="2">검체채취</th><th rowspan="2">예방조치</th><th rowspan="2">발생감시</th></tr>
<tr><th>인후도찰*</th><th>채혈</th></tr>
<tr><td rowspan="2">농장 종사자</td><td>발생농장</td><td>○</td><td>×</td><td>○</td><td rowspan="6">• 항바이러스제 투여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 개인보호구 지급**
• 인체감염 예방교육</td><td rowspan="6">능동감시***

※ 예방적 살처분 농장 종사자는 수동감시</td></tr>
<tr><td>예방적 살처분 농장∵</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살처분 참여자</td><td>발생농장</td><td>○</td><td>×</td><td>×+</td></tr>
<tr><td>예방적 살처분 농장∵</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응 요원</td><td>발생농장</td><td>○</td><td>×</td><td>×</td></tr>
<tr><td>예방적 살처분 농장∵</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 colspan="6">질병관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td></tr>
</table>

※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상군과 상관없이 인후도찰 실시

+ : 역학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체채취를 할 수 있음

* :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단, 질병관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접종중단시기 결정)

** : 살처분 농장의 보호구 지급은 살처분과 오염제거 완료시까지 지급

*** : 능동감시 : 최종접촉일로부터 5일째 및 10일째 이상유무 확인(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증상발생 유무 조사)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의 연관성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농장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준하여 인체감염 예방관리조치 시행(채혈 제외)

2. 만성감염병 관리

2-1 결핵 관리사업

2-2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2-3 HIV/AIDS 예방관리

2-4 한센병 관리

정부합동평가

2-1. 결핵 관리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우리나라 인구의 1/3인 1,500만여명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으며, 충북도내에서는 매년 900여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높은 결핵 발생률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초래

< 문제점 >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집단 발병 확산

○ 난치성 결핵(다제내성 결핵, 슈퍼결핵)의 위험 증가 추세

- 다제내성결핵은 장기간 고가 약제로 치료하여야 하나 치료성공률이 낮고, 공기 중으로 전염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켜줄 수 있음.

○ 결핵환자의 45%가 생산연령층(20~40대)으로 생산성 손실 초래

○ 민간병의원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등 결핵환자관리에 소홀

□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

□ 추진방침

○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으로 결핵환자관리 강화

□ 사업개요

1. 국가결핵예방 사업(도 직접사업)

○ 사 업 비 : 69백만원 (국비50%, 도비50%)

○ 사업내용

≪결핵 진단 검사≫

-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 시 환자접촉자에 대한 X-선 검진, PPD시행 및 인터페론감마 검사 실시

※ 결핵 의심자는 아니지만, 객담 도말양성 환자의 밀접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검사(PPD)시행 후 반응검사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 인터페론감마 검사 실시함.

- 기준인원 2,000명 × 6,000원 × 4회(접촉자검진+추구검진)
- X-선 검진기관 :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지부
- 인터페론감마 검사기관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결핵관리인력지원≫

- 도 결핵관리종합 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지원
  결핵관리담당자 교육 및 지도, 결핵정보통합관리 통계분석
  약품 및 기자재 관리
- 근무위치 : 도 보건정책과

2. 결핵 조기 발견·검진사업

○ 사 업 비 : 50,000천원 (도비100%)

○ 주최,주관 : 도,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지부

○ 사업내용

- 오·벽지 농촌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X-선 이동검진 및 전염성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배양검사 확대 실시
- 보건소 결핵균 검사업무
- 결핵관련 업무담당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 사 업 비 : 99백만원 (국비 100%)

○ 사업내용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 3명
- PPM사업단 운영(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주관)
-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 지원
- 전담간호사역할 : 민간병의원 결핵환자 내원독려, 복약확인,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치료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지원기관 : 충북대학교병원 , 한마음재단 하나병원
  청주성모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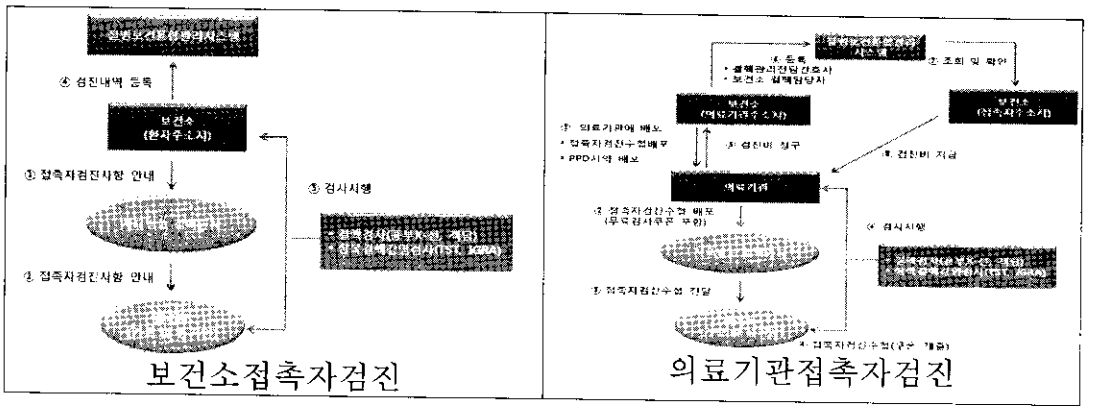
4. 시군 결핵예방사업

○ 사 업 비 : 524백만원(국비50%, 도비8%, 시군비42%)

○ 사업내용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지원≫

- 대 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촉자
  · 진단코드 : A15.00~A16.91,A19.1~A19.9,U88.1,U88.1
- 지원범위
  · 결핵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잠복결핵 감염검진 : TST(투베르쿨린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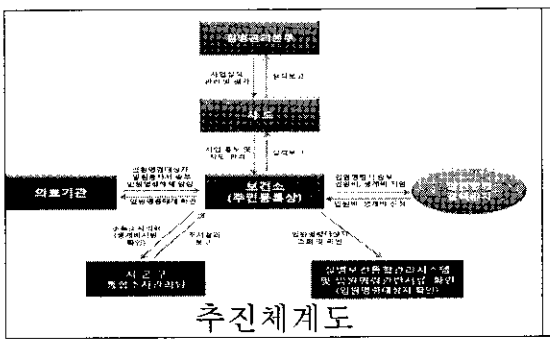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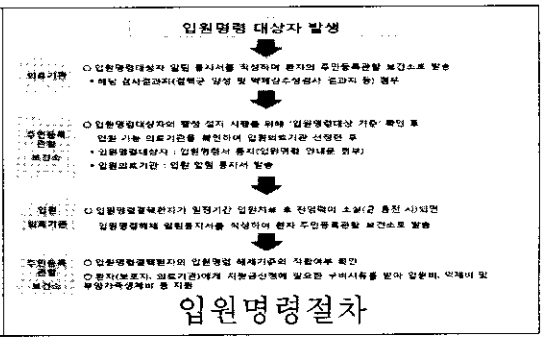
- 입원비 지원 대상

· 전염성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객담도말또는 배양양성인 경우)또는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호흡기 결핵환자(객담도말또는 배양양성)

·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



추진체계도



입원명령절차

- 생계비 지원 대상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치료중인 결핵환자로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환자가구(300%)	1,810,209	3,082,251	3,987,354	4,892,460	5,797,566	6,702,669	7,607,77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 생계비 지원범위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 비급여 항결핵제 지원대상
  · 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비급여 항결핵제 처방 받아 복용한 환자
  · 입원명령실시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1년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 비순응결핵관리요원 지원
  · 지원대상 : 청주시 상당·흥덕,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음성군
  · 지원근거 : 관할 내 결핵환자 신고수
  · 업무범위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직접복약확인사업, 입원명령지원사업, 결핵환자 가족검진(밀접접촉자검진)사업등

□ 행정사항

○ 결핵약품 및 기자재 등 사용예정량 및 재고량, 유효기간 등을 파악하여 연중 수급계획 철저

○ 보고사항 이행철저
-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
  · 익월 5일까지 웹 보고(http://is.cdc.go.kr)
- 결핵집단 발생보고(**즉시보고**)
  · 6개월 내 동일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에서 활동성결핵환자 3명이상 또는 객담도말 양성 환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2014년 취약계층 결핵엑스선 이동검진 계획

구 분		검 진 목 표 (명)			검진 일수 (일)	검 진 일 정	
		계	오·벽지 주 민	수용시설		오·벽지 주 민	수용시설
총 계		5,700	4,050	1,650	44	2. 4 ~11.19(31)	2. 6 ~ 11.20(13)
청주시	소 계	1,000	600	400	8		
	청원구	250	150	100	2	11.11	11.12
	상당구	250	150	100	2	11.13	11.14
	서원구	250	150	100	2	11.17	11.18
	흥덕구	250	150	100	2	11.19	11.20
충주시		800	450	350	6	11 5~11. 7(3)	8.27~ 8.29(3)
제천시		550	450	100	4	8.11~ 8.13(3)	8.14
보은군		360	310	50	3	2. 4~ 2. 6(3)	
옥천군		810	310	500	6	2. 7~ 2.11(3)	7.22~ 7.24(3)
영동군		410	310	100	3	2.13~ 2.17(3)	
진천군		360	310	50	3	2.19~ 2.21(3)	
괴산군		360	310	50	3	2.27~ 2.28(2)	3. 3
음성군		500	450	50	4	8.21~ 8.25(3)	8.26
단양군		280	280		2	8.18~ 8.19(2)	
증평군		270	270		2	2.25~ 2.26(2)	

2-2.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성매개감염병 발생예방 및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 건강과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5,318천원(기금50%,도비15%,시군비35%)

- 성병진단시약 11,800천원
- 에이즈진단시약 27,118천원(청주시 상당·흥덕)
- 성병실험실진단 26,400천원(청주시 흥덕, 충주시)

○ 사업내용

-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검진 및 치료 유도
-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홍보 강화
- 성매개감염병환자 치료 강화

□ 추진계획

○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검진 및 치료 유도

- 성매개감염병 감염우려자(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등)
- 정기적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검진 실시로 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

○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홍보

- 성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으로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감염자의 치료기피현상 해소
- 위생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업소 및 대상자에게 지속적·집중적 지도

○ 성매개감염병환자 치료 강화

-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등)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
- 고위험집단관리 대상자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보건소등)에서 무료 치료

○ 검진 주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 수시 건강진단 대상자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 행정사항

○ 보고사항 이행 철저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실적보고
  · 상반기 7.10, 하반기 1.10 공문 보고
- 성매개감염병환자(의사환자 포함) 발생보고 : 매주 화요일(주1회)
  · 표본감시의료기관 자료수집 ⇒ 주단위로 신고자료 수집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웹보고(http://is.cdc.go.kr)

※ 기타 세부사항은 **『성매개감염병관리지침』** 참고 추진

2-3. HIV/AIDS 예방관리

에이즈 감염인 조기발견 강화 및 신규감염 감소를 위한
검진·교육·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에이즈 전파방지

□ 추진방침

○ 감염인 조기 발견사업 활성화
○ 감염인 보호·지원 사업 추진
○ 예방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1. 감염인 발견사업 활성화

○ 익명검사 실시
- 익명 검사 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일체 연락처 등을 묻지 않도록 하고 지정날짜에 피검사자가 보건소로 전화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분 보장 실시

○ HIV 조기 확진체계 운영
- P.A법에 의한 1차 검사(항체검사)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송부 2차 항원검사를 추가 실시 (청주시 제외)
  · 추가 항원검사(HIV) 실시로 초기 급성감염자 발견·관리

2. 감염인 보호·지원 사업 추진

○ 근　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업내용
- 진료비 지원(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 감염인의 치료 순응도 향상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감염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재산의 소득환산 시 특례제도 적용
- 감염인 개인정보 보안 철저
  ·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비밀누설금지 및 HIV감염인 개인정보가 기재된 관련 자료 보안철저
  · 방문보건요원 등에 대한 HIV 감염인 정보열람 허용 금지
  ※ 의료인은 일반적인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주의지침(Standard precaution)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중의 노출을 대비하기 위한 HIV 감염사실 고지 의무 없음

3. 에이즈 환자 진료비 및 감염인 관리

○ 사 업 비 : 109,360천원(진료비 107,600천원, 등록경비 1,760천원)

○ 진료비 지급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시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제 지급
- 감염인의 진료비용에 대한 후불협조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진료비 청구계좌에 해당 의료기관(계좌)을 기입하여 직접 의료 기관에 지급

○ **진료비 지급시 주의 사항**
- 진료비(약값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10%)만 지원함**을 원칙
-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질환으로 타병원을 방문 진료시 해당 영수증에 관리 의료기관 감염내과 담당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 보건요원이 에이즈감염인 또는 환자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차액 등 비급여 부분 및 간이영수증(수기용)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진료비 심사시 에이즈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타과 진료 또는 CT, MRI 진단 시 등)는 담당의사에게 동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받아야한다.
- 현재 칵테일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되므로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감염인으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최종 확진된 날로부터 지급한다.

  단, 동 입원 진료시 HIV 감염이 최종 확인되기 전에 HIV 감염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료비를 동 입원시부터 소급인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 외항선원 및 국외체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진료비청구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을 정밀한 검토 없이 지급하고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료비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감염인의 진료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기준으로 집행 한다. 단, 전년도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본인부담 상한제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액의 연간 (매년 1.1~12.31)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이 있음

<연평균 보험료(기준보험료)에 따른 상한액>

연평균 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2012년도 기준금액(진료기준일)		본인부담 상한액
	지역	직장	
하위50%	51,890원 이하	60,510원 이하	**200만원**
중위30%	51,890원 초과 ~131,240원 이하	60,510원 초과 ~119,370원 이하	**300만원**
상위20%	131,240원 초과	119,370원 초과	**400만원**

4. 에이즈예방 홍보활동 강화

○ 에이즈예방 상담 및 홍보·교육 실시

- 사 업 비 : 40,000천원 (도비100%)
- 사업대상 : 학생, 민방위·예비군, 군인, 교도소 등
- 주최,주관 : 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충북지회
- 사업내용
  - 전문강사 위촉 교육신청 기관·단체 순회교육
  - 에이즈 전문상담실 운영 및 상담사업 (HIV감염인 및 일반인)
  - 보건소 에이즈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등

○ 보건소 에이즈예방사업

- 대중매체(보건소 홈페이지, 전광판 등), 언론 등을 통한 예방홍보
- 유흥업소 업주 등 관할지역 대상자 방문교육
- 민원대기실을 통한 예방홍보
  - 홍보물 비치, 패널 전시, VTR상영 등
- 『세계에이즈의 날(12.1)』 대대적 예방캠페인 전개

□ 행정사항

○ 에이즈 감염인/환자 발견 보고

- 의사(의료기관)가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또는 감염인 및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신고

  ※ 선별검사(1차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미결정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 보 건 소 : 신고접수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도에 유선보고

○ 보건소 자체홍보계획 수립보고 - 익년도 1월 10일까지

○ 진료비 지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으로 보고
상반기 , 하반기 완료해야 됨

※ 기타 세부사항은 **「HIV/AIDS 관리지침」** 참고 추진

2-4. 한센병 예방관리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병력자에 대한 관리·치료를 통한 전파 방지 및 재활사업, 생계 지원 등으로 복지 증진 도모

□ 추진방침

○ 한센인 생계비 및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

○ 환자 관리 및 가족과 접촉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

□ 사업개요

1.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 사 업 비 : 125,926천원(국비 50%, 도비50%)

○ 사 업 량 : 79명 ※ 지원기준 : 1인기준/연1,594천원

- 세부내역

급량비 3,600원×365일 =1,314,000원, 피복비 35,000원, 침구비 50,000원
김장비 35,000원 수용비 70,000원, 난방비 90,000원

○ 사업내용

-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량비, 피복비, 침구비, 난방비등 지원

※ '15년 생계비 지원기준 강화로 지원대상자 축소 예정

기 존	변 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관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사**람으로 관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 시 이중급여,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생계비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한센서비스 대상자 본인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사망자 발생으로 예산잔액 발생 시 신규지원대상자 선정 지급

2.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 사 업 비 : 54,000천원(국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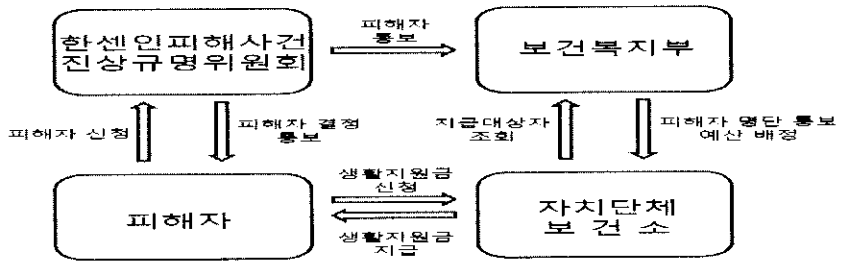
○ 사 업 량 : 30명(청원군)

○ 사업대상 :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생존자 본인에 한함)

○ 사업내용

- 해방이후 의 한센인피해사건(단종,낙태,폭행,강제노역등)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원법 제정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 지원절차



<생활지원금>

〈 한센인 피해사건이란 〉

○ 1945. 8. 6. ~ 1963. 2. 8. 한센인 수용시설에 입소자 중 폭행, 부당감금, 본인 동의 없이 단종(斷種), 낙태를 당한 사건

○ 1945. 8. 20. 전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갱생원에서 한센인이 직원폭력으로 사망, 행방불명, 부상당한 사건

○ 1962. 7. 10. ~ 1964. 7. 25. 전남 고흥군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에 한센인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3. 한센인 진료사업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100%)

○ 사 업 량 : 54,000명

○ 주최,주관 : 도,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 사업내용

- 시·군 2개월 1회, 정착촌 월 1회 이상 이동 순회진료
- 한센병의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수족, 특수화 등) 제작·지원

□ 추진계획

1.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및 치료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정기 이동진료는 시·군은 2개월에 1회, 정착촌은 월 1회 이상 출장하여 기 관리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투약 및 진료

○ 치료 기피자나 거동불편 환자에 대하여는 가정 방문하여 치료

○ 한센병 이동진료반에 대한 보건소 지원 협조

- 정기 이동 진료일에 대상자 전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원 협조
-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피부병 및 잘 낫지 않는 피부병환자는 정기 이동 진료일을 이용하여 상담 및 진료토록 조치
- 기타 보건소 방문 피부질환자 중 의심자 검진의뢰

2. 신환자 발견사업 강화

○ 환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

○ 유병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검진 , 피부질환 환자 검진

□ 행정사항

○ 한센병관리사업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한센사업관리지침」** 참고 추진

2013년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및 검진계획

(단위 : 명)

시군별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일반검진	
	환 자 관 리				균동태		한 센 사 업 대상자 진 료	정밀진찰		외래 피부 건진	이동 진료
	소 계	요치료	한센서비스 대상자	(재발관리)	양성자	음성자		균동태 양성자	균동태 음성자		
총 계	281	136	145	131	-	281	1,731	-	281	52,000	4,230
청주시 소계	47	20	27	26	-	47	266	-	47	-	640
청주시 상당	17	8	9	9	-	17	105	-	17	-	320
청주시 흥덕	33	15	18	17	-	33	161	-	33	-	320
충주시	30	20	10	10	-	30	251	-	30	-	320
제천시	11	9	2	2	-	11	111	-	11	-	320
청원군	58	37	21	18	-	58	461	-	58	-	320
청원농장	13	9	4	4	-	13	124	-	13	-	70
보은군	17	6	11	10	-	17	85	-	17	-	320
옥천군	20	5	15	15	-	20	75	-	20	-	320
영동군	23	5	18	14	-	23	74	-	23	-	320
증평군	6	4	2	2	-	6	74	-	6	-	320
진천군	16	6	10	9	-	16	81	-	16	-	320
괴산군	14	5	9	9	-	14	69	-	14	-	320
음성군	13	2	11	7	-	13	33	-	13	-	320
단양군	5	2	3	3	-	5	27	-	5	-	320
외 래	5	3	2	2		5		-	5		-
한센협회										52,000	4,230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요치료자 년12회, 재발관리자 년1회

○ 정밀진찰 : 균동태 양성자 = 년2회

3. 예방접종사업

3-1 국가예방접종

3-2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3-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3-4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3-5 인공면역 획득사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부합동평가

3-1. 국가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양육부담경감과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퇴치 기반형성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5조

○ 사업비 : 1,919,400천원(기금50%, 도비15%, 시군비35%)

○ 사업량 : 156천명

○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무료접종, 접종대상자 관리 및 홍보
- 관내 접종의료기관 교육 및 관리
-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BCG(피내용), B형 간염 ,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 /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노인폐렴구균, 소아폐렴구균

□ 예방접종 업무 추진 방향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 보건복지부 고시(2013-29호)

- 백신 콜드체인 유지, 예진 및 이상반응 관찰 철저 등

○ 예방접종 대상자 및 예방접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관리

- 지역사회 예방접종대상자를 확인하여 맞춤형 접종안내 제공
-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손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접종서비스 제공 및 관리
- 대상자 특성에 맞는 예방접종 교육 및 자료제공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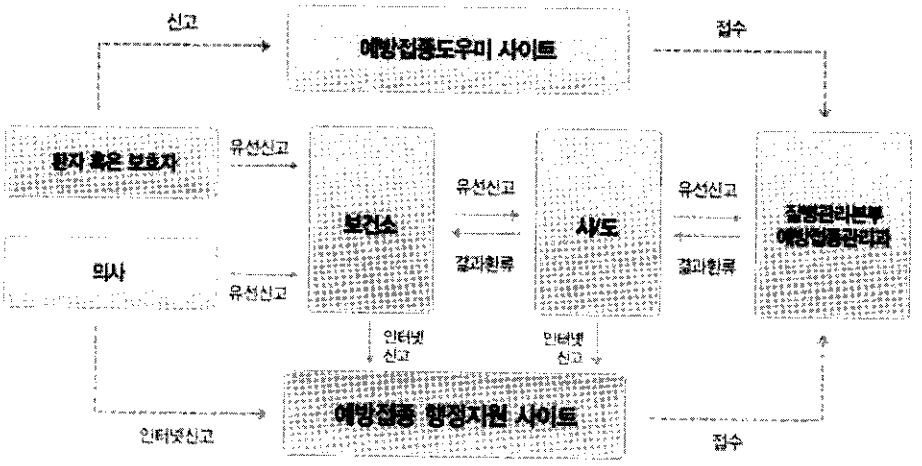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디티에이피(DTaP), 티디(Td), 티댑(Tdap), 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DTaP-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주사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 신고대상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형간염 및 폴리오(주사용)의 기준에 준한다.

※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보상가능 기간은 예방접종 후 4시간 이내로 한다.

○ 이상반응 신고체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의사 또는 보호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대상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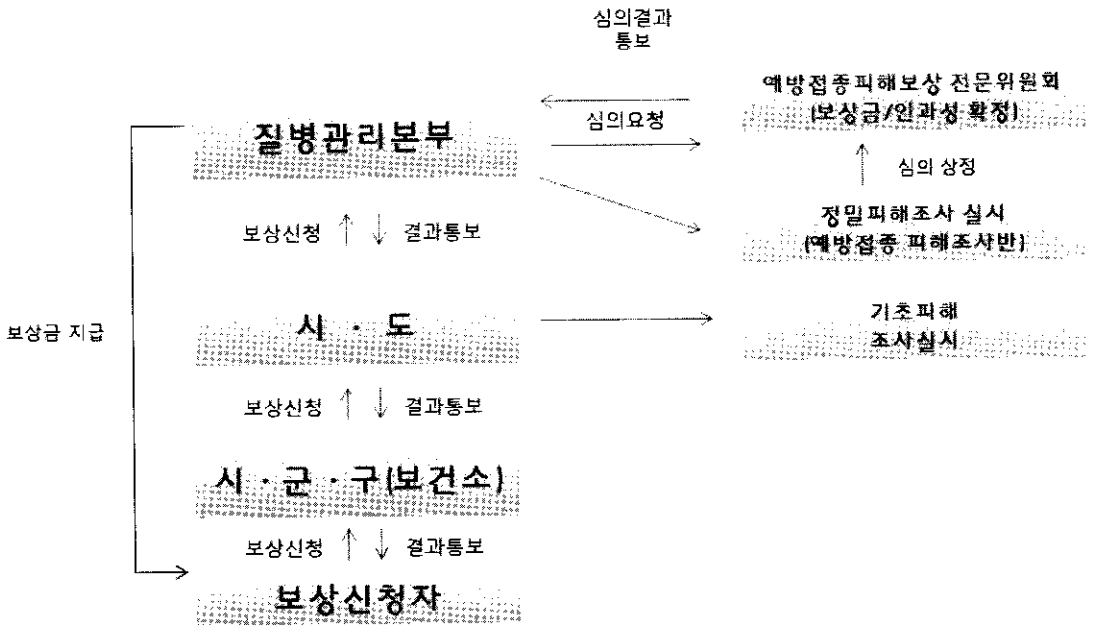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법 개정 중)**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행정절차

- 피해보상 신청 대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군·구에 보상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즉시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절차



○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가.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①-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①-2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①-3 이의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⑤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을 경우)

⑥ 진료비영수증

⑦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나. 시·군 제출서류

⑧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

⑨ 과거예방접종력

⑩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⑪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의 명부

⑫ 국가검정성적서

⑬ 냉장고점검표 및 관리대장

⑭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⑮ 약품보관증(봉인의약품시)

⑯ 의료기관 진료비내역 확인서

⑰ 동일 백신 제조번호 접종자 설문내역

⑱ 사망진단서 및 부검소견서(사망시)/심리평가보고서(불안반응시)

다. 시·도 제출서류

⑲ 기초피해조사의견서/피해조사 보고서

【참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기준

1)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다른 이유에 의한 결과의 발생 역시 백신 접종에 의한 개연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떨어지고,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5)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의 근접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1), 2), 3)의 경우 보상 인정

3-2.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퇴치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 사 업 비 : 8,803,960천원(기금50%, 도비15%, 시군비35%)

○ 사 업 량 : 256천명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2001.1.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지원

○ 지원백신 : 13종

BCG (피내용),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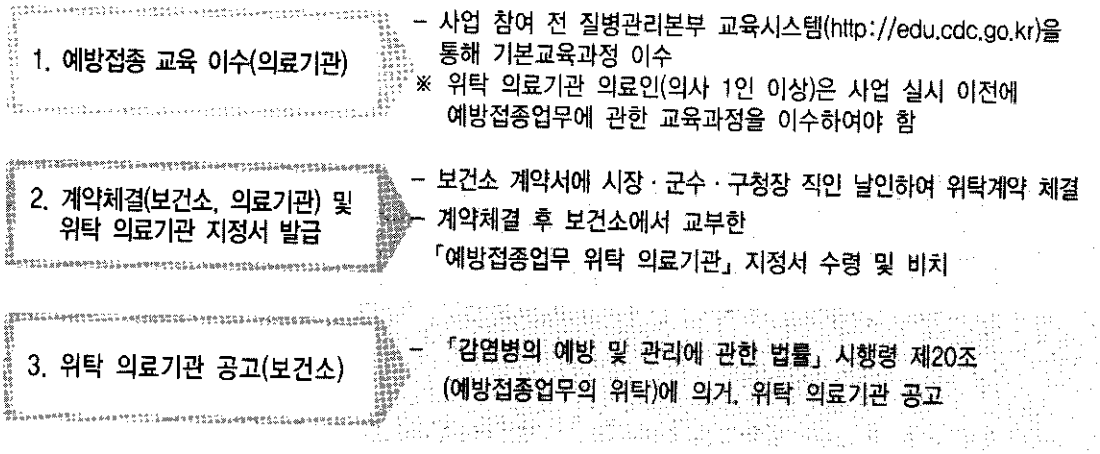
※'14년 일본뇌염 생백신(2.10), 소아폐렴구균 백신(상반기 예정) 지원 신규 도입

○ 사업체계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 위탁
-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시행
-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비용지급

□ 위탁계약 관리

○ 위탁계약 절차



○ 계약 변경 및 갱신

-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재작성

  ※ 계약 백신변경, 의료기관 정보(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등) 변경시

- 위탁계약기간(2년) 만료 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후 재계약 체결
-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의료기관 상세정보에서 당초 위탁계약일 변경금지

  ※ 위탁계약일 변경 시 이전 접종내역에 대해 비용상환 불가

○ 계약 해지

-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약 가능
- 위탁의료기관에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위탁계약 해지 갈음

○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공고 : 보건소 및 시·군 홈페이지 게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 공고내용 : 위탁의료기관명, 위타기간, 위탁 백신 등

□ 예방접종 비용상환 관리

○ 예방접종지원 비용

가.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백 신 비
결핵	BCG(피내용)	14,800원
B형간염	HepB	2,10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140원
	Td	12,580원
	Tdap	19,290원
폴리오	IPV	8,42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9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310원
수두	Var	11,91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4,580원
	JEV(생백신)	11,210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6,850원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5,43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23,150원

※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2014년 1월 기준

○ 비용상환 업무처리 기한

구분	내용	처리 기한	처리 기관	법적근거
비용 상환	신청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 가급적 접종 당일에 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의료 기관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단, 신생아 제외) ※ 자료가 미비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10일)은 기한에 미포함	보건소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지급	월 2회 이상	보건소	-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 기관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 법적근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8호)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관리

○ 위탁 의료기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점검표 확인 및 방문점검 실시

- (위탁의료기관)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자율점검표 제출
- (보건소) 연 1회 이상 의탁의료기관 방문점검

○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 불필요한 추가접종,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실시기준 유의사항 안내 및 관리

《 참조 : 2군 감염병 격리 입원비 지원》

◈ 2군 감염병 일부(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격리입원비

○ 격리입원비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원 접종비 예산**에서 지원

○ 홍역 격리입원비

- 대상 : 홍역 실험실적, 역학적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 지원기준 : 홍역 전염기간[발진발생(D-day) 4일전(D-4)부터 발진 후 5일(D+4일)] 중 격리입원 치료 시작일 부터 격리입원 치료 해제일까지 **해당일수에 따라 3만원 정액지급**

※ 신고 이전 격리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하며,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자는 결과를 확인한 날까지 지원됨

- **격리입원 치료비용 청구 절차** : 환자(보호자)가 진료 종결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구비 서류 : 진료내역서, 의사 소견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 등

-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보고 : 짝수 월 25일까지 도에 보고

○ 홍역 격리입원 치료 지원 현황(양식)

연번	시도	보건소	성명	생년 월일	검사 결과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일	확진검사결과 확인일	격리 해제일	지원 일수	지원 금액	비고

○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공문

-보건정책과-26022(2011.12.23.), 18266(2012.8.20.), 664(2014.1.8.)호

○ 디프테리아, 폴리오의 경우 최근 5년간 환자발생이 없어 지침 없음

3-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신생아 B형간염 환자발생 감소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규칙 제34조

○ 사 업 비 : 51,426천원(기금50%, 도비15%, 시군비35%)

○ 사업목표

- 신규등록 : 484명 ≒ 15,139명('12년 출생아수) × 0.032(산모 HBsAg 양성률)

○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사업내용 :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원· 항체검사, B형간염 재접종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분만기관 : 사업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받음,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 및 예방접종 내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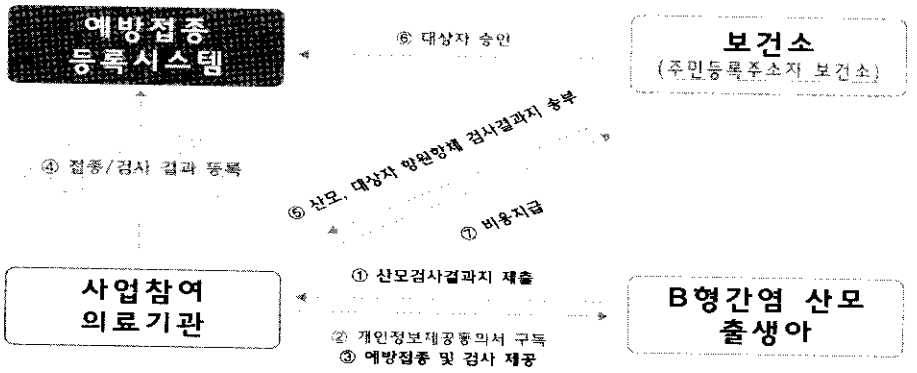
○ 접종기관 :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 항체검사, 결과 등록

○ 보 건 소 : 대상자 승인, 비용상환

※ 2014년도 변경

- (기존)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 포함)'을 발급하여 쿠폰 제출을 통해 처치 및 관리
- (변경) 쿠폰발급(제출) 없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등록시스템으로 등록·관리

○ 사업추진 체계도



□ 비용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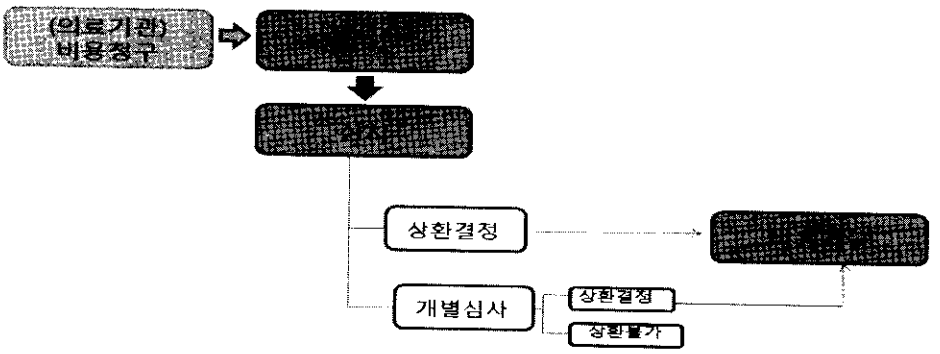
○ (의료기관) 접종 및 검사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보건소)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하여 14일 이내 심사, 30일 이내 비용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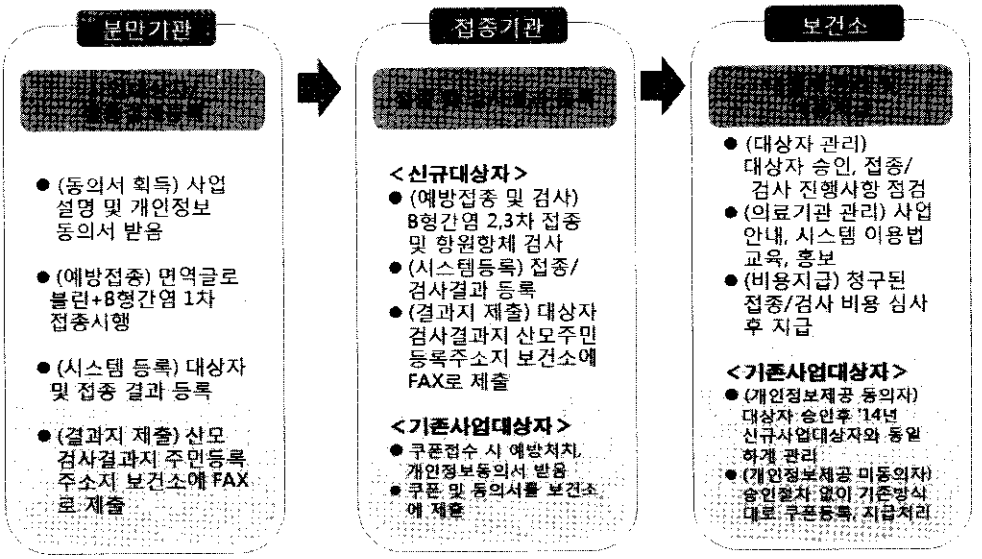
○ 비용상환 금액

구 분	금 액
HBIG	26,800원
B형간염 1차 접종	21,200원
B형간염 2차 접종	21,200원
B형간염 3차 접종	21,200원
항원·항체 검사	36,300원

○ 비용상환 체계도



□ 기관별 역할



□ 행정사항

○ 지역사회 홍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전달체계 유지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e.go.kr)을 통한 의료기관 교육관리

○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 주관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점검 실시(연 1회이상)

- 등록된 대상자의 산전 검사결과지, 항원·항체 검사 결과지 확인
- 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5년)여부 확인

○ 해당 보건소로 신청된 사업대상자 승인 및 관리

○ 비용상환 신청건의 14일 이내 비용상환 결정, 30일 이내 비용지급

3-4.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률을 95%이상으로 향상하여 학교생활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 28조,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사업대상 : 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07.1.1.~12.31. 출생아 및 의무취학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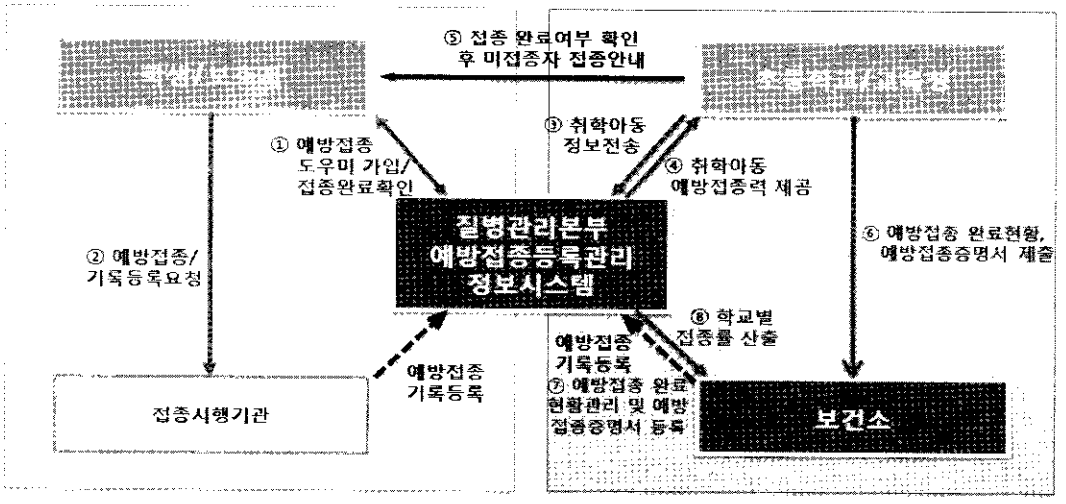
○ 사업대상 예방접종 :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 사업내용

- 교육부 학생정보와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등학교 입학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4종)의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 사업 추진체계



① ② 학생/보호자는 초등학교 입학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등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 확인후 누락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되지 않은 접종은 접종시행기관에 등록 요청

③ 교육부는 2014년도 취학아동의 학생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 전송

④ 질병관리본부는 취학아동의 학생정보에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부로 전송

⑤ ⑥ 초등학교는 나이스에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자에게 접종 실시 안내 후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

⑦ ⑧ 보건소는 미완료자에게 접종을 안내하고,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산등록하여 학교별 접종률 산출

□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일정	사업내용	
'13. 12월	취학통지서 발급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배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방법 안내	→ 미접종자 : 예방접종 실시 및 전산등록 전산미등록자 :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14. 1~2월	신입생 예비소집 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	
'14. 4월 초	취학아동 정보 전송 (교육청 → 질병관리본부)	
'14. 4월 초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정보 및 주민등록 오류자 분류 (질병관리본부→교육부→학교:나이스)	
'14. 4월 중~	학교장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정보 나이스 반영 상태, 학생 정보확인 및 접종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14. 5월 초	취학아동 정보 및 주민등록 오류자의 기초정보 전송 (2차) (교육청 → 질병관리본부)	
'14. 5월 초	취학아동 예방접종 정보 전공 (2차) (질병관리본부→교육부→학교:나이스)	
'14. 5월 초~	학교장은 NEIS에서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후 접종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14. 6월 초	학교장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	→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14. 7월 초	보건소는 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 정산등록, 미접종자 관리를 통한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 행정사항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홍보 및 안내

- 반상회, 소식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입학 전 예방접종 완료하도록 홍보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 접종기관 역할수행 안내 및 관련 서식 제공
- 초등학교에 사업 안내 및 관련서식 제공

○ 폐업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대행

-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의 이관 관련)
- 의무기록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 사실 확인 후,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이 있는 경우 확인사업대상 4종에 한해 전산 등록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 완료현황 전산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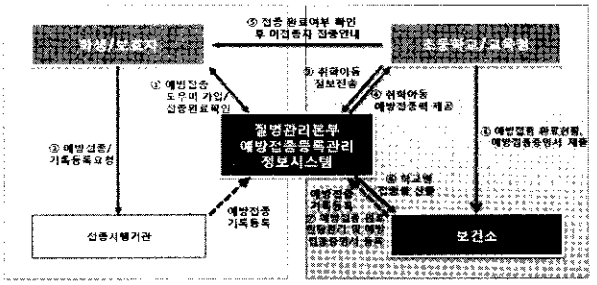
- 보건소장은 6월 초까지 관내 초등학교장에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 완료현황〉을 제출토록 요청
- 8월 초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및 학교별 접종률 산출

○ 취학아동의 미완료자 현황 파악 및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주요 변경사항>

<table>
<tr><th>2014년도 지침</th><th>비 고</th></tr>
<tr><td>1. 사업 대상
○ <u>2014</u>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수정>
(2007.1.1.~12.31. 출생아와 의무 취학 예정자)

2. 사업 내용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수정>
-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3. 사업체계<수정>


4. 시·군·구 역할
○ 미접종 취학아동 접종지도<추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미접종자 관리> 기능을 통해 미완료자 현황 파악 및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td><td>-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자 확대
· 자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된 아동 중 자연접종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

- 보건소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기능 추가</td></tr>
<tr><td>5.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보고 서식<수정>
<table>
<tr><th colspan="10">DTaP 5차</th></tr>
<tr><th rowspan="3">계</th><th colspan="5">접종</th><th colspan="4">미접종</th><th rowspan="3">접종률[5]
(%)</th></tr>
<tr><th rowspan="2">소계</th><th colspan="2">전산등록 확인자</th><th colspan="2">전산 미등록자</th><th rowspan="2">소계</th><th colspan="2">예방접종 제외자[4]</th><th rowspan="2">미접종자</th></tr>
<tr><th>나이스 연계[1]</th><th>기타[2]</th><th>증명서 제출자[3]</th><th>증명서 미제출자</th><th>생략자</th><th>금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 나이스 연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와 연계되어 나이스에서 접종이 확인된 학생 수
2) 기타: 나이스 이외의 방법으로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확인된 학생 수
3) 전산 미등록자/증명서 제출자: 해당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하여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아동
4) 예방접종 제외자: 확인대상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이나,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아동과 예방접종 금기자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아동
5) 접종률: 확인대상 백신별 취학아동 학생 중에 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비율(전산등록 확인자 및 전산 미등록자의 비율)</td><td>- 정확한 통계를 위해 접종자는 접종을 확인한 방법에 따라,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제외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td></tr>
</table>

3-5. 인공면역 획득사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한 인플루엔자 이환율 및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감소

○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 부담감소로 도민보건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28,800천원(도비30%, 시군비70%)

○ 사업기간 : 2014. 10~12월

○ 사업대상

- 1순위 - 65세 이상 노인,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중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 2순위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3순위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보건소장이 정하는 자

※ 우선접종 권장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 예방접종 시 준수사항

○ 지역 실정에 맞는 분산 접종계획 수립·시행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로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 접종대상자에 대한 의사 예진 철저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안내

○ 백신 콜드체인 유지

○ 태풍 등 재난 사항으로 정전시 백신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자가 발전기,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예방접종 후 발생될 수 있는 이상반응을 피접종자에게 숙지시키고 보건소에서 약 20분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함

○ 응급처치세트 및 앰뷸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

□ 출장 예방접종 관련 지침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예방접종(의료행위)은 의료기관내에서 시행하여야 함

-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의료법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소에서 무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 안전한 접종 환경 :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뷸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행정사항

○ 인플루엔자 일일보고(보고기간 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인플루엔자 일일보고 관리'

4. 만성질환 관리

4-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4-2 지역사회 건강조사

4-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유병률 등 질병 부담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기금50%, 도비50%)

○ 사업대상 질환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요인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 심뇌혈관질환 : 뇌졸중, 심근경색증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 위탁방법 : 공모 선정

○ 위 탁 처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013.2.1~2014.12.31

○ 명 칭 :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 책 임 자 : 충북대의대 예방의학과 김헌 교수

□ 주요사업 내용

가.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14년 운영될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개발

○ 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 시군 사업 평가 후 성과 인센티브 지급(포상 등)
- 보건소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 도 심뇌혈관질환 인식 수준 개선·홍보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보건소 연계사업 수행

나.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중앙 개발 TV광고 등 홍보매체 활용 및 홍보효과 확인

○ 공단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 연계 사업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자 연계 사업(사업안내 등)

□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FMTP)

○ 사 업 비 : 36,000천원(기금50%, 시군비50%)

○ 사 업 량 : 12명(시·군 보건소)

○ 사업대상 : 심뇌혈관질환관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 담당자

○ 교육기관 : 건국대학교

□ 행정사항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 : 반기보고(익월 10까지)

4-2.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군 단위 지역주민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통계 생성
근거중심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수행 기반 마련

□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15,838천원(기금50%, 시·군비50%)
○ 사 업 량 : 11,587명
○ 사업대상 : 보건소당 만19세 이상 성인 평균900명
○ 사업내용
- 조사방법 : 보건소당 4~6명의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1:1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4. 8. 16~10. 31
- 조사내용 :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
- 조사문항 : 전국공통문항 166개 + 지역선택문항 약 20개
* 2014~2017 순환조사체계 : 1년·2년·4년 주기의 전국공통문항과 지역선택문항으로 구성
추진방법 : 보건소별 선정전 책임대학교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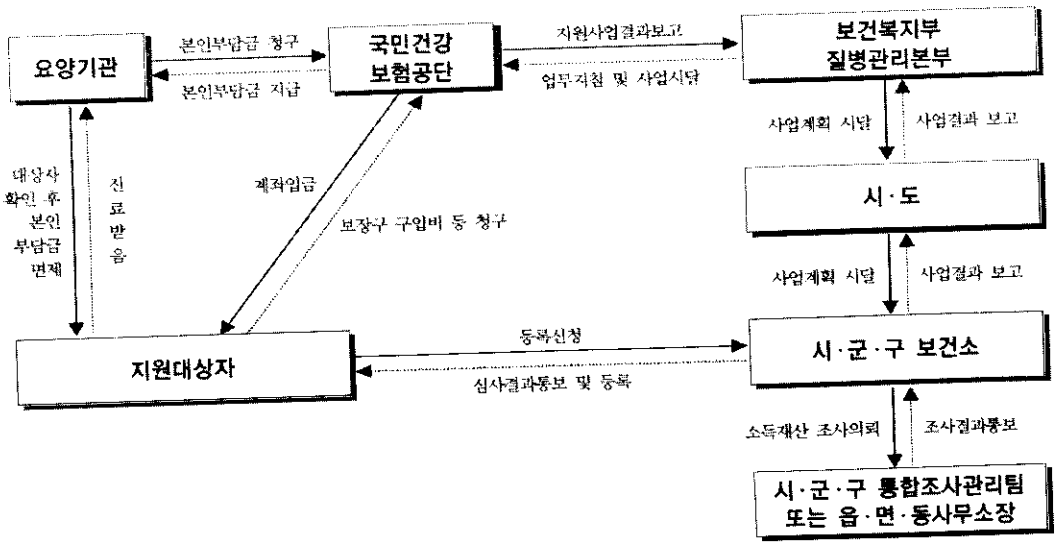
체계

원회) 질병관리본부, 17 시·도, 17개 권역대표대학교, 전문기술위원으로
사업계획 확정 및 관련 주요사항 결정
무국)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사업계획 수립, 조사수행 및 관리 지침 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원시자료공개, 자료 분석 지원 등 수행
역대학과 위탁계약 체결, 주민홍보, 조사수행 지원, 결과활용
)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수행, 자료수집, 분석, 통계집 작성

□ 수행절차

단계	질병관리본부	위탁대학교	보건소
조사기획 (1~2월)	사업계획서 배포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 체결
(3~5월)	표준설문지 개발 (지표표준화분과)		
	표본설계 (표본설계분과)		
	질관리평가지표 개발 (질관리 및 평가분과)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교육홍보분과)		
조사준비 (6~8월)	조사수행지침 개발 조사문항지침 개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일정 수립	지역주민 홍보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책임대학교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책임대학교육 참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전산지원시스템 오픈	조사대상 가구추출	
조사수행 (8~10월)	중앙콜센터 운영	권역콜센터 운영	비상연락체계 운영
		조사수행 및 자료전송	
	조사현장방문	조사현장방문 조사자료 모니터링	중앙 및 책임대학교 조사현장방문 지원
	조사완료건 전화점검 (제3기관 위탁)	전화점검결과 재확인 및 처리결과 보고	
자료분석 (11~12월)	입력자료 오류수정		
	분석용 DB 배포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교육	통계분석	
	표준통계양식 및 작성 지침 배포	시·군·구 통계집 작성	통계집 검독
	조사원수기공모전 개최 (교육홍보분과)		조사원수기공모전 입선자 시상식
익년 (1~2월)	시·도 표준통계 작성지침 배포	시·군·구 통계집 발간	
	질관리평가결과서 작성 (질관리 및 평가 분과)	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	질관리평가결과 확인
	사업계획서 배포		
익년 (3월)	결과보고대회 개최	결과보고대회 참여	결과보고대회 참여

〈사업 수행 체계도〉



□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가. 정기 재조사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 매 2년마다 실시

-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에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에 실시

2) 특례적용자의 정기 재조사 : 매 2년마다 실시

나. 수시 재조사

-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

□ 지원대상자 퇴록

○ 소득·재산의 변동

- 정기재조사 시 : 기준 초과시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6월말 또는 12월말에 퇴록
- 수시재조사시 : 변동이 있는 날로 퇴록

○ 장기이식 관련

- 만성신부전증(N18)은 장기이식 수술을 실시한 날로 퇴록

○ 의료보장 자격변동 및 지원대상자의 사망

-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동 되는 경우 : 자격전환 전날로 퇴록사유발생일 지정하여 퇴록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지원 가능하므로 관련 자격은 유지

-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한 날 퇴록

□ 퇴록 방법

○ 희귀난치성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퇴록조치

○ 사망으로 인한 퇴록을 제외하고는 등록증 회수

□ 사업비 예탁 및 지급

○ 사업비 예탁 및 지급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름

○ 예탁금 수납

- 시·군 보건소는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예탁금을 보건소별 공단 수납계좌에 수납

○ 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 보건소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 집행

○ 예탁금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소별 매월 의료비지원내역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2014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일반기준(300%)	1,810,209	3,082,251	3,987,354	4,892,460	5,797,566	6,702,669	7,607,775
혈우병(400%)	2,413,612	4,109,668	5,316,472	6,523,280	7,730,088	8,936,892	10,143,700
고쉐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7,240,836	12,329,004	15,949,416	16,308,200	19,325,220	22,342,230	25,359,250
고쉐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은 3인이하 가구는 1,200%미만, 4인이상 가구는 1,000%미만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일반기준(500%)	3,017,015	5,137,085	6,645,590	8,154,100	9,662,610	11,171,115	12,679,625
혈우병(600%)	3,620,418	6,164,502	7,974,708	9,784,920	11,595,132	13,405,338	15,215,550
고쉐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8,447,642	14,383,838	18,607,652	19,569,840	23,190,264	26,810,676	30,431,100
고쉐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은 3인이하 가구는 1,400%미만, 4인이상 가구는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4년 최고 재산액	농어촌	43,470,096	53,638,297	60,873,333	68,108,393	75,343,453	82,578,489	89,813,549
	중소도시	48,470,096	58,638,297	65,873,333	73,108,393	80,343,453	87,578,489	94,813,549
	대도시	68,470,096	78,638,297	85,873,333	93,108,393	100,343,453	107,578,489	114,813,549
일반 기준 300%	농어촌	130,410,288	160,914,891	182,619,999	204,325,179	226,030,359	247,735,467	269,440,647
	중소도시	145,410,288	175,914,891	197,619,999	219,325,179	241,030,359	262,735,467	284,440,647
	대도시	205,410,288	235,914,891	257,619,999	279,325,179	301,030,359	322,735,467	344,440,647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434,700,960	536,382,970	608,733,330	681,083,930	753,434,530	825,784,890	898,135,490
	중소도시	484,700,960	586,382,970	658,733,330	731,083,930	803,434,530	875,784,890	948,135,490
	대도시	684,700,960	786,382,970	858,733,330	931,083,930	1,003,434,530	1,075,784,890	1,148,135,490
혈우병 · 고쉐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4년 최고 재산액	농어촌	43,470,096	53,638,297	60,873,333	68,108,393	75,343,453	82,578,489	89,813,549
	중소도시	48,470,096	58,638,297	65,873,333	73,108,393	80,343,453	87,578,489	94,813,549
	대도시	68,470,096	78,638,297	85,873,333	93,108,393	100,343,453	107,578,489	114,813,549
일반 기준 500%	농어촌	217,350,480	268,191,485	304,366,665	340,541,965	376,717,265	412,892,445	449,067,745
	중소도시	242,350,480	293,191,485	329,366,665	365,541,965	401,717,265	437,892,445	474,067,745
	대도시	342,350,480	393,191,485	429,366,665	465,541,965	501,717,265	537,892,445	574,067,745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521,641,152	643,659,564	730,479,996	817,300,716	904,121,436	990,941,868	1,077,762,588
	중소도시	581,641,152	703,659,564	790,479,996	877,300,716	964,121,436	1,050,941,868	1,137,762,588
	대도시	821,641,152	943,659,564	1,030,479,996	1,117,300,716	1,204,121,436	1,290,941,868	1,377,762,588
혈우병 · 고쉐병 · 파브리병·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14년('1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2014. 1.

2014년('1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 보건·위생분야 4개시책 10개 평가지표

※ 세부지표수 26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계	10	26
3-1. 응급의료 관리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3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2
3-2. 건강증진	3-2-1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기반 확충도	2
	3-2-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 및 체감도	3
	3-2-3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실적	1
3-3. 질병관리	3-3-1 암 관리 실적	2
	3-3-2 정신보건 관리	3
3-4. 감염병 관리	3-4-1 감염병 관리실적	2
	3-4-2 결핵관리	2
	3-4-3 예방접종 실적율	6

평가시책	3-1 응급의료 관리		
평가지표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가중치	7.9
측정방법	○ 산식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시도 응급의료기관 관리율 ㉯-1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율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센터수/지역응급의료센터수) ×100 ㉯-2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지역응급의료기관수) ×100 ㉰ 지역 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 산식설명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시도,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필수요소 : 소방 참여,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DMAT 출동, 모의환자 동원 ㉯ 시도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1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율 : 관할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센터수 ㉯-2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시군구별 관할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의 비율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 - (평가목적)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강화는 새정부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며, 보건(응급의료)과 소방(구급)의 협업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지역내 119-응급실 연계와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건-소방-응급의료기관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협력이 필요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 및 충실도 (40%)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성 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 사례 분석(case review)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적절한 개선 대책 수립 정도
	연계·협력성 (20%)	· 시 · 도 보건과,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 관련 전문가 등 각종 지역자원 종합 · 연계 및 협력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 법정 시 · 도 응급의료위원회 및 자체 협의체 개최건수 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정도
	효과성 (20%)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기관간 협력, 사례 분석) 활성화로 지역의 응급의료 현황지표, 문제점 개선 정도

○ 평가대상

㉮, ㉯-1

㉯-2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시 · 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 ㉰ : 2013.1.1. ~ 2013.12.31 / ㉯ : 2012.7.1. ~ 2013.6.30

자료 제출 서식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단위 : 회)

구 분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시도	

㉯ 시도 응급의료기관 관리율

㉯-1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율

(단위 : 개, %)

구 분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센터수(A)	지역응급의료센터수(B)	(A + B) × 100
○○ 시도			

㉯-2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단위 : 개, %)

구 분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A)	지역응급의료기관수(B)	(A + B) × 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 : 제출서식 없음

증빙자료

㈎ 재난대응 훈련시행 계획 및 시행결과 보고서 공문서 사본

㈏ 응급의료기관 관리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활용)

㈐ 지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충실도(정성평가)

㈐-1 총괄표

연번	사례명	주요 내용	기대 효과(주요 성과)
1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1장씩으로 작성

㈐-2 2013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행결과 보고서, 2013년도 시도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협의회 활동결과 보고서, 문제사례 분석 보고서(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결과 포함)

㈐-3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계자료

㈏ 시도 응급의료기관 관리율(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분석 통계,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우진(02-2023-7273, caasf@korea.kr)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02-2023-7337, resmith@naver.com)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02-2023-7371 hongji3755@korea.kr)

평가시책	3-1 응급의료관리		
평가지표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가중치	4.9

측정방법

○ 산식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

-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 중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한 환자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수)×100
- 금년도 현황비율 순위점수 × 50% +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순위점수 × 50%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발병 24시간이내 환자 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입원환자수)×100
- 금년도 현황비율 순위점수 × 20% +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 순위점수 × 80%

* 순위점수 : 1순위 16점, 2순위 15점, ……, 16순위 1점
- 관리목표를 달성한 시·도의 현황 순위는 모두 1순위 배정
- 전년도와 금년도 모두 관리목표 달성한 경우 개선정도 순위는 1순위 배정

○ 산식설명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 :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수 (목표 : ≥80%)

*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경우 해경 선박·헬기, 응급의료전용헬기 등 포함

㉯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급성심혈관질환,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 중 적정시간내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한 환자수 (목표 : ≥60%)

* 적정시간 : 급성심혈관질환 2시간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내, 중증외상 1시간내

○ 평가대상

㉮, ㉯ : 시·도

○ 평가기준일

- ㉮, ㉯ : 2013.1.1. ~ 2013.12.31

자료제출서식

㉮ 중증외상 및 심정지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률

㉮-1

(단위 : %)

구 분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 중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한 환자수 (A)	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수 (B)	(A/B)×100
○○ 시도			

㉮-2

(단위 : %)

구 분	2013년 측정현황(A)	전년대비 개선 정도(B) (2013년 측정현황 - 2012년 측정현황)
○○ 시도		

<table>
<tr><td>자료 제출 서식</td><td>㈏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 비율
㈏-1
(단위 : %)
<table>
<tr><td>구 분</td><td>발병 24시간이내 환자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A)</td><td>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입원 환자수(B)</td><td>(A/B) ×100</td></tr>
<tr><td>○○ 시도</td><td></td><td></td><td></td></tr>
</table>
㈏-2
(단위 : %)
<table>
<tr><td>구 분</td><td>2013년 측정현황(A)</td><td>전년대비 개선 정도(B)
(2013년 측정현황 - 2012년 측정현황)</td></tr>
<tr><td>○○ 시도</td><td></td><td></td></tr>
</table></td></tr>
<tr><td>증빙 자료</td><td>㈎, ㈏ 증빙자료 불필요(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등록자료 활용)</td></tr>
<tr><td>통계 자료</td><td>㈎, ㈏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등록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td></tr>
<tr><td>문의처</td><td>㈎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배철희(02-2023-7274, chorhee@korea.kr)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현주 (02-2023-8182, E-mail : bbbinlhz@korea.kr)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02-2023-7371 hongji3755@korea.kr)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오가영 (02-2023-7271, E-mail : okyok@korea.kr)</td></tr>
</table>

평가시책	3-2 건강증진		
평가지표	3-2-1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기반 확충도	가중치	5.7

측정방법

○ 산식

㉮ 보건사업 지방비 투자비중

- [지방비투자금액/(지방자치단체 총예산 × 재정자주도)]×100

㉯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 노력

- (2012년 근무자 중 20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재고용된 인력 수 /2012년에 근무한 모든 인력 수) × 100

○ 산식 설명

㉮ 보건사업 지방비 투자비중

- 지방비 투자금액 : 시도가 보건사업(보건기관 인력 인건비, 경상운영비, 보건사업비)에 실제로 투자한 지방비(국비, 시·군·구비 제외)
  - 시도 자체사업 예산 포함
-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 해당연도 지자체(시도) 예산의 총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 재정자주도 : '13.12.31 기준 재정자주도 (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 노력

- 2012년에 근무한 모든 인력을 분모로 하며, 2012년 근무자 중 20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재고용된 인력수를 분자에 기입함
-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12년에 근무한 모든 인력이라 함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인력으로 A의 고용 중단에 따라 B를 고용할 때 이는 1인으로 판단함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② 지역사회중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영양플러스사업 ⑤ 보건소 금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⑫ 치매조기검진사업 ⑬ 치매노인사례관리
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13년 근무 인력이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근무인력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국비·지방비로 고용된 인력'만 포함함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3.12.31.

㉮ 보건사업 지방비 투자비중

	시도 「지방비 투자 금액」 예산(A)	지방자치단체 총예산(B)	재정자주도(C)	A/(B×C)×100
00 시도				

㉯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 노력

1. 구 분	'12년에 근무한 모든 인력 (B)	'12년 근무인력 중 '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재고용된 근무인력 (A)	(A/B) × 100
총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자 료 제 출 서 식

㉮ 보건사업 지방비 투자비중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 노력

㉯-1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 노력(총괄표)

2012년 근무한 모든 인력	가. '13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재고용된 근무인력	지속적 고용 여부	비고
홍길동	홍길동	1	
김철수	-	0	
나영희	나영희	1	
박영철	-	0	

※ 2013년 근무 여부 : 여 = 1, 부 = 0

㉯-2 ('13년)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가입 자료, 근로계약서 등)

㉯-3 ('12년)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가입 자료 등)

증 빙 자 료

통 계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재정자주도 - 2013년 행정안전통계연보, 안전행정부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 현황(보건복지부)

문의처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창규(02-2023-7498, E-mail :satorare77@gmail.com)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소정(02-2023-7845, E-mail : hepsiba4309@korea.kr)

평가시책	3-2 건강증진		
평가지표	3-2-2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 및 체감도	가중치	10.5

측정방법

○ **산식**

㉮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평가)

㉮-1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평가)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도의 시·군·구 사업 지원 노력 및 조직 운영의 통합적·효율적 운영 실적을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2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 성과(정성평가)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시도 교육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실적을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평가)

㉯-1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체계 구축 실적(정성평가)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군·구의 사업 체계 구축 실적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2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 사업 사례(정성평가)

-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3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 평가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시도)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 **산식 설명**

㉮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평가)

㉮-1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평가)

- 시도 운영 성과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도의 노력(시·군·구 사업 지원 노력, 내부 조직운영)실적을 제출 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시도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수행(시·군·구 사업 지원 포함)을 위한 조직 내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수행되었는가? ·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시도 및 사업 지원단이 기술 지원 및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성과(정성평가)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시도 교육의 운영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실적을 제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교육 운영성과	· 시도는 교육계획 · 운영 ·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은 중앙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시 · 군 · 구 통합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보건소장을 제외한 공무원 및 전문인력)는 중앙에서 인정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30시간)을 이수하였는가?

※ 교육이수시간 승계가능(2013년 1월~12월)

㉯ 시 · 군 · 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평가)

㉯-1 시 · 군 · 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체계 구축 실적 (2건)

- 시도가 관할지역 시 · 군 · 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 구축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표와 함께 평가순위 1-2위까지 2건을 제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체계구축 실적	· (효과성) 지역사회 주민 수요 및 특성에 따라 사업을 선정 · 추진하고, 보건소 내 부문 간 연계로 사업 간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하였는가? · (형평성) 지역사회 보건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협력성)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공동 운영 하였는가? · (조직)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수행되었는가? · (환류)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목표달성)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 시 · 군 · 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사업 사례 (3건)

-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성, 효과성, 노력성, 만족도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사업 3건을 제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우수사업	· (차별성) 사업 수행 체계, 수행 방식, 추진 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등 사업 전반에 있어 기존의 사업 내용과 차별화 하여 사업 수행한 정도 · (효과성) 목표 대비 실적(전년도 수행한 사업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실적 명시), 비용(예산) 대비 효과, 건강수준 개선도, 수혜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 (노력성) 한정된 예산 및 인력 대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체감·인식 평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함 (시도별 체감도)

○ **평가대상 :**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3. 12. 31

자료제출서식

㉮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 평가) : 제출서식 없음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 평가) : 제출서식 없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 제출서식 없음

증빙자료

㉮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 평가)

㉮-1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

㉮-1-1 총괄표

연번	주요내용	추진성과
1		

㉮-1-2 시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2 시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 성과

㉮-2-1 총괄표

연번	주요내용	추진성과
1		

㉮-2-2 시도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3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이수실적(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정성 평가)

㉯-1-1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체계구축 실적 평가표

평가순위	시군구명	점수
1		
2		
3		
⋮		

㉯-1-2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체계구축 실적 총괄표

연번	주요내용	추진성과
1		
2		

㉯-2-1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 사업 사례 총괄표

	연번 | 주요내용 | 추진성과 1 | | | 2 | | | 3 | | |
통 계 자 료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창규(02-2023-7498, E-mail : satorare77@gmail.com)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소정(02-2023-7845, E-mail : hepsiba4309@korea.kr)

평가시책	3-2 건강증진		
평가지표	3-2-3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실적	가중치	5.1
측정방법	○ 산식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x 0.4)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 x 0.3) + (영유아검진 수검률 x 0.3) ○ 산식설명 1)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해당 지역 수검자 수/해당 지역 대상자 수) x 100 - 해당 지역 수검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실제 1차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 - 해당 지역 대상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 인원 *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12.31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수검률 산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 2)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 : (해당 지역 수검자 수/해당 지역 대상자 수) x 100 - 해당 지역 수검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중 1차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 - 해당 지역 대상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대상 인원 *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12.31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수검률 산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 3) 영유아검진 수검률 : (해당 지역 수검자 수/해당 지역 대상자 수) x 100 - 해당 지역 수검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실제 검진을 받은 인원 - 해당 지역 대상자 수 : 각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대상 인원 *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12.31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 수검률 산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 실적 ○ **평가기준일** : 2013. 1. 1 ~ 2013. 12. 31 검진받은 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 1. 31 기준으로 작성)		

<table>
<tr><td>자 료
제 출
서 식</td><td>㉮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일반검진</th><th colspan="3">생애전환기검진</th><th colspan="3">영유아검진</th><th rowspan="2">(Cx0.4)+
(Fx0.3)+
(Ix0.3)</th></tr>
<tr><th>수검자 수(A)</th><th>대상자 수(B)</th><th>수검률(C) =(A/B) ×100</th><th>수검자 수(D)</th><th>대상자 수(E)</th><th>수검률(F) =(D/E) ×100</th><th>수검자 수(G)</th><th>대상자 수(H)</th><th>수검률(I) =(G/H) × 100</th></tr>
<tr><td>시군구 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군</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증 빙
자 료</td><td>㉮ 증빙자료 불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활용)</td></tr>
<tr><td>통 계
자 료</td><td>㉮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td></tr>
<tr><td>문의처</td><td>㉮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진순(02-2023-7516, E-mail: leejsoon@korea.kr)</td></tr>
</table>

평가시책	3-3 질병관리		
평가지표	3-3-1 암 관리 실적	가중치	8.7
측정방법 측정방법	○ **산식** ㉮ 암 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 / 검진대상건수) × 100 ㉯ 지정 완화의료 병상 증가율 = {('13년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 - '12년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12년 완화의료 병상 수} × 100 ○ **산식설명** ㉮ 암 검진 수검률 - 수검건수 : 암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한 사람의 암종별 해당 연령*에서 수검암종의 합 - 검진대상건수 : '13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암검진 대상자의 암종별 해당 연령의 검진대상 암종의 합(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암검진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암종별 집중 검진 대상 연령 수검률로 평가 - 위암, 간암, 유방암 : 40-69세 - 자궁경부암 : 30-69세 - 대장암 : 50-69세 ** 의료급여수급자 간염검사는 제외, 건보가입자 자궁경부암 검진은 포함 ※ '14. 1. 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된 자료에 한함 ㉯ 지정 완화의료 병상 증가율 -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가 지정 업무를 수행 중 - 지표 의미 : 완화의료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어 지정 완화의료 병상 증가율을 통해 시·도가 완화의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 - 산출방법 :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지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 실적 ㉯ 시·도		

<table>
<tr><td></td><td>○ 평가기준일 : 2013. 12. 31</td></tr>
<tr><td>자 료
제 출
서 식</td><td>㉮ 암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table>
<tr><th>구분</th><th>수검자수(A)</th><th>대상자수(B)</th><th>(A/B) × 100</th></tr>
<tr><td>시군구 합계</td><td></td><td></td><td></td></tr>
<tr><td>○○시</td><td></td><td></td><td></td></tr>
<tr><td>○○군</td><td></td><td></td><td></td></tr>
<tr><td>○○구</td><td></td><td></td><td></td></tr>
</table>
㉯ 지정 완화의료 병상 증가율
(단위 : 개, %)
<table>
<tr><th>구 분</th><th>'12년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A)</th><th>'13년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B)</th><th>(B-A/A)×100</th></tr>
<tr><td>OO 시·도</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증 빙
자 료</td><td>㉮ 암검진 수검률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활용)
㉯ 지정 완화의료 병상 증가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활용)</td></tr>
<tr><td>통 계
자 료</td><td>㉮ 암검진 수검률(보건복지부)
㉯ '12년도, '13년도 완화의료 병상수 및 증가율(보건복지부)</td></tr>
<tr><td>문의처</td><td>㉮,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우경미 서기관(02-2023-7556, wookm@mw.go.kr)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임현 주무관(02-2023-7561, ih4478@korea.kr)</td></tr>
</table>

평가시책	3-3 질병관리		
평가지표	3-3-2 정신보건 관리	가중치	13.3

측정방법

○ 산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등록관리율 × 0.6) + (집중사례관리제공률 × 0.4)
  * 등록관리율 =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수/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100
  * 집중사례관리제공률 = (집중사례관리수혜자 수/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수) × 100

※ 각 세부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0.6, 0.4)를 부여함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 (일반상담서비스 제공률 × 0.6) + (지속서비스 제공률 × 0.4)
  * 일반상담서비스 제공률 = (일반상담 실인원/정신질환자 추정 수) × 100
  * 지속서비스 제공률 = (지속서비스 대상자 수/일반상담 실인원) × 100

※ 각 세부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0.6, 0.4)를 부여함

측정방법

○ 산식설명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자살예방 관련 조례 제정(각 시·도별 소속 시·군·구의 조례 제정 비율 및 신규 제정 비율)

△ 자살예방사업 관련 자체 예산 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내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

△ 국내·외 대중매체에 자살예방사업(정신보건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반·이장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현황

- (평가세부기준) 4가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 자살예방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 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 자살예방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 자살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 자살예방대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효과성(20)	· 자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
  1) 주민등록 인구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2) 진단기준 : ICD 10 진단코드 F20-29, F30-31.9, F32.2, F32.3에 해당하는 대상자
  3) 1% :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 등의 일년유병률 합을 근거로 추계
-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 '13년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증정신질환자(기존 등록회원+신규 등록회원)
- 집중사례관리수혜자 : '13년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증정신질환자 중 서비스 제공기간 중 월 평균 2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수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 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3.5%
  1) 주민등록 인구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2) 13.5% :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정신질환 일년유병율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
- 일반상담 실인원 : '13년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 일반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 19세 이상('94.12.31 이전 출생) 지역주민 실인원

- 지속서비스 대상자 : 일반상담 대상자 중 일반상담 이후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서 4회 이상의 대면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자

○ 평가대상

㉮,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3. 12. 31

자료 제출 서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구 분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A)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수(B)	집중사례관리 수혜자 수(C)	{(B/A)×100×0.6} + {(C/B))×100×0.4}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구 분	정신질환자 추정 수(A)	일반상담 실인원(B)	지속서비스 대상자 수(C)	{(B/A)×100×0.6} + {(C/B))×100×0.4}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빙 자료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총괄표

연번	사업명	주요 개선 내용	기대 효과
1			
2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각각 1장씩으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층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 층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계자료	㉮ 해당없음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보건복지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효진(02-2023-7574, E-mail: khj0621@korea.kr)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병희 주무관(02-2023-8110, E-mail: lbh81@korea.kr)

평가시책	3-4 감염병 관리		
평가지표	3-4-1 감염병 관리실적	가중치	11.1
측정방법	○ 산식 ㉮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100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보고일수/운영일수) × 40} + {(∑참여 보건소 수/관할 보건소 수/운영일수) × 60}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1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참여율) ※ 인구기준이 10만명 이상인 경우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0.5) + (수족구병 표본감시 신고(참여)율×0.3) + (표본감시기관 지정율×0.2) ※ 인구기준이 10만명 미만인 경우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0.6) + (표본감시기관 지정율×0.4) ㉰-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진단일= 0 또는 1) /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 × 100 · 신고기한 : 전수감시 감염병의 신고기한인 '지체없이'의 기준을 진단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일 이내로 함 · 전체 연간 신고건 : 해당 자치단체 관할 의료기관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신고건의 합계 · 전수감시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2군 산모B형간염 제외)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0.4)+(유행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0.2)+(감염원 규명률×0.1)+(원인병원체 규명률×0.3)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 / (위생업소 수 × 3 × 4)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 50}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 50}		

측 정 방 법	○ 산식설명 ㉮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추적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추적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추적조사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 : '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관리시스템'의 '대량환자관리'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 시도 보고일수 : 연중감시체계 운영일수(299일)중 시도에서 관할 보건소 일일보고건을 취합 보고한 일수 - 운영일수 : 299일('13.3.1일부터 적용, 명절기간 비상근무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 5~9월까지는 매일(공휴일 포함) 운영, 그 외의 달은 월~금요일 운영 ※ 연중감시체계 : '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집단설사 및 수인성 감염병(제1군 법정전염병) 연중 감시 - Σ참여 보건소 수 : 연중감시체계 운영일 중 각 시도의 관할 보건소에서 보고를 실시한 보건소 수의 합(보고한 보건소 수를 합산) ※ 예시 : 서울특별시 25개 보건소 중 "3.1일 24개, 3.2일 20개, 3.3일 25개"인 경우 = {(24+20+25) / 25 / 3} × 50]= 46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1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참여율)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 (1~52주 신고기관 수 / 1~52주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 × 100 - 수족구병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 (1~52주 신고기관 수 / 1~52주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 × 100 ·1~52주 신고기관 수 : 1주부터 52주까지 수족구병/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제로보고 포함)를 신고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의 합계 ·1~52주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 :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1주부터 52주까지 수족구병/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의 합계 ㉰-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진단일= 0 또는 1) /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 × 100 ·신고기한 : 전수감시 감염병의 신고기한인 '지체없이'의 기준을 진단일로부터 신고일까지 1일 이내로 함 ·전체 연간 신고건 : 해당 자치단체 관할 의료기관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신고건의 합계 ·전수감시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외)

측정방법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역학조사 적시 보고율 = (역학조사 적시 보고 건수 /감염병 웹 보고건수)× 100 · 역학조사 적시 보고 건수 : 의료기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웹 또는 공문으로 승인·보고한 역학조사 건수 · 감염병 웹 보고건수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보고 시스템(is.cdc.go.kr)을 통해 보고한 건수 ※해당질환(17):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브루셀라증,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뎅기열, 큐열, 공수병, 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보고율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건수 /유행건수) × 100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건수 :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한 건수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시·군·구 주관 역학조사: 유행종결 선언 후 2주 이내 시·도 주관 역학조사: 유행종결 선언 후 30일 이내 · 유행건수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을 "입국자 추적시스템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에 보고하거나 유선/팩스로 보고한 건수 ※ 시·도 공문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유행종결일을 미기재한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직접 산출하여 적용함 - 원인감염원 규명률= (원인감염원 규명건수 /유행 역학조사 결과 보고건수) × 100 - 원인병원체 규명률=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유행 역학조사 결과 보고건수) × 100 · 원인감염원 및 원인병원체 규명건수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의 "유행원인 판단기준"에 따라 감염원 및 병원체를 규명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 2개 이상 시·도(시·군·구)에서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주관 보건소'가 함 ※ '원인감염원 규명률'과 '원인병원체 규명률'은 환례 7명 이상에서만 적용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 : 2013년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총 검진건 수 - 위생업소 수(2012년 12월 31일 기준) × 3항목(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4회(연간 건강진단 횟수) ※ 위생업소 수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이 속한 업소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만 산출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완료한 수혈자 수 ※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인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확인 완료로 인정 -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 :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수혈자 인적사항 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의 채혈대상 수혈자 중 보건소에서 채혈조사를 완료한 수혈자 수 ※ 채혈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혈불가 사유를 기재한 건에 한하여 추적조사 완료로 인정 -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 : HIV 확진자의 과거 헌혈혈액 수혈자 중,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에 따라 채혈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혈자 수

측정방법

○ **평가대상**

- ㉮, ㉰, ㉱,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 실적
- ㉯,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3. 12. 31

자료제출서식

㉮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A)	추적조사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B)	(A/B)×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연중감시체계 운영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시도 보고일수(A)	운영일수 (B)	Σ참여 보건소 수(C)	관할 보건소 수(D)	{(A/B)×40}+{(C/D/B) ×60}
○○시도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1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참여율)

(단위 : 개, %)

구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A)			수족구병 표본감시 신고(참여)율(B)			(A×0.6)+ (B×0.4)
	1~52주 신고기관 수(①)	1~52주 표본감시기관 수(②)	A= (①/②)×100	1~52주 신고기관 수(③)	1~52주 표본감시기관 수(④)	B= (③/④)×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단위 : 건, %)

구분	연간 신고기한 준수건(①)	연간 전수감시감염병 신고건(②)	(①/②)×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자 료 제 출 서 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단위 : 건, %)

구분	역학조사 적시 보고율(C)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보고율(F)			원인감염원 규명률(I)			원인병원체 규명률(L)			계 (C×0.4)+(F×0.2) +(I×0.1)+(L×0.3)
	감염병 웹 보고 건수 (A)	사례 조사 적시 보고 건수 (B)	C= (B/A) × 100	유행 건수 (D)	유행 역학 조사 결과 보고 서 적시 제출 건수 (E)	F= (E/D) × 100	원인 감염 원 규명 건수 (G)	유행역 학조사 결과보 고건수 (H)	I= (G/H) ×100	원인 병원 체 규명 건수 (J)	유행역 학조사 결과보 고건수 (K)	L= (J/K)× 100	
시군구 합계													
○○시													미입력
○○군													미입력
○○구													미입력

※ 시군구의 '계'는 계산하지 않음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표

(단위 : 건수)

구분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A)	위생업소 수(B)	A / (B × 3 × 4)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단위 : 명, %)

구분	인적사항 확인 완료 수혈자 수(A)	인적사항 확인 대상 수혈자 수(B)	채혈조사 완료 수혈자 수(C)	채혈조사 대상 수혈자 수(D)	{(A/B)×50}+ {(C/D)×50}
○○시도					

증 빙 자 료	㉮,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1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참여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실적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실적(보고된 문서)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완료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활용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및 수족구병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분석자료(보건복지부) ㉰-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분석자료(보건복지부) ㉱-1 법정감염병 적시 사례조사 현황(보건복지부) ㉱-2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현황(보건복지부) ㉱-3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유행 역학조사 원인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현황(보건복지부) (환례 7명 이상인 경우) ㉲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실적(보건복지부) ㉳ HI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자료 및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문의처	㉮,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김은경(043-719-7136, E-mail: kek79@korea.kr)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이주선(043-719-7167, E-mail : ljoosun@korea.kr)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박숙경(043-719-7165, E-mail : monica23@korea.kr)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장은정(043-719-7194, ejjang@korea.kr)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황지영(043-719-7332 E-mail: imjy2002@hotmail.com)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신지연(043-719-7663, E-mail: shinjy77@korea.kr)

평가시책	3-4 감염병 관리		
평가지표	3-4-2 결핵관리	가중치	5.7
측정방법	○ 산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B × C/D × 100 · A = B 중 검진실시자 수(보건소 가족검진 실시 총 수 + 쿠폰 등록 건수) · B =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총 수(임신부 제외) +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 대상 가족·동거인 검진쿠폰 발생 총 수 · C =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 D = 도말양성 결핵환자(독거 제외) ※ C/D: 가족검진참여율, A/B: 가족검진완료율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A/B × C × 100 · A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치료성공자(완치+완료) · B = 사업 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퇴록자(완치+완료+실패+중단+전출) · C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가 25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250미만인 경우는 1 **※ 2012년 실적평가까지는 B에 '사망'이 포함되었으나, 2013년 실적평가부터는 제외** ○ 산식설명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검진실시자 수 :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검진 실시 총 수 +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 검진쿠폰 등록 건수 - 검진실시자 인정 대상 · 35세 미만 : 흉부 X-ray와 객담검사를 실시했거나, 흉부 X-ray와 TST를 실시한 경우 (흉부 X-ray와 객담검사가 모두 음성이나 TST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2013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 인정하는 IGRA 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실시자 인정** · 35세 이상 : 흉부 X-ray를 실시한 경우 - 대상환자 :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된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치료성공자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치료 종결 후 치료성공자 수로 완치자 + 완료자 + 전출후 완치자 + 전출후 완료자수를 말함 - 사업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퇴록자 : 사업전년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치료 종결자 수로 완치자 + 완료자 + 실패자 + 중단자 + 전출 후 완치자 + 전출후 완료자 + 전출자 · 치료성공기준 :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완치"+"완료"판정자 · **전출 후 치료결과는 전산으로 자동 산출되므로 전입 기관에 전입신고 및 치료결과 입력 독려(모든 자료는 전산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별도 자료제출 미반영 예정)** · 지역사회 도말양성 결핵신환자가 250명 이상인 경우, 5% 가중치를 줌 - 대상환자 : 사업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된 도말양성 결핵(질병코드 A15.00~A15.01) 신환자 중 퇴록자이므로, 평가 시점에서 확인된 경우까지만 인정**(별도 입력기간 미부여 예정이므로, 반드시 퇴록 후 시스템 확인요망)**		

【 예시 】

· 2012년 12월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2013년 6월에 "완료"판정되었으나, 2014년 1월에 평가시점에서 "완료"로 퇴록입력을 안한 경우
  - 확인 시점에서 퇴록이 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단"으로 판단하여 평가

측정방법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3. 12. 31

자료제출서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단위 : 명, %)

구분	B 중 검진실시자 (A)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총 수 +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 검진쿠폰 발생 총 수 (B)	1명 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C)	도말양성 결핵환자 (D)	A/B×C/D×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

(단위 : 명, %)

구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자(A)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퇴록자(B)	(B)가 250명 이상(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도말양성 결핵(질병코드 A15.00~A15.01)신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

*** C에는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중 퇴록자(B)가 250명 이상인 경우는 1.05입력, 250명 미만인 경우는 1 입력**

통계자료

㉮-1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 및 검진자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가족검진))

㉮-2 의료기관 도말양성 결핵환자 및 검진자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의료기관 접촉자검진))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의 치료성공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신고))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유정희
(043-719-7319, E-mail: cheeyu@korea.kr)

평가시책	3-4 감염병 관리		
평가지표	3-4-3 예방접종 실적율	가중치	6.7

측정방법

○ 산식

㉮ 영유아 예방접종률: (예방접종건수 / 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100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적기 접종건수 / 당해년도 출생아 대상 접종건수)× 100

○ 산식설명

㉮ 영유아 예방접종률

- 예방접종건수 : 12세이하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예방접종 전산등록건수(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12세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반으로 2013년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체 접종건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출생·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필수예방접종 백신명 및 연령별 접종횟수

· 필수예방접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JEV(사백신), Var, Td, Tdap, Hib

· 2013년 필수예방접종 11종 백신으로 확대(Hib 3월시행 기준 추가)

· 연령별 접종횟수 : 0세 13회, 1세 6회, 2세 1회, 6세 4회, 12세 2회

연령	예방접종 내용	접종횟수
0세	BCG(1회), HepB(3회), Hib(3회)[주1], {DTaP(3회), IPV(3회)} 또는 DTaP-IPV(3회)[주2]	13회
만 1세	DTaP(1회), MMR(1회), JEV(2회), Var(1회), Hib(1회)	6회
만 2세	JEV(1회)	1회
만 6세	JEV(1회), MMR(1회), {DTaP(1회), IPV(1회)} 또는 DTaP-IPV(1회)[주]	4회
만 12세	Td(1회) 또는 Tdap(1회) , JEV(1회)	2회

주1) Hib 백신 중 PRP-OMP로 1차, 2차 접종완료시 기초 3회 적용

주2) DTaP-IPV 콤보백신 접종은 DTaP와 IPV 동시 접종과 동일 횟수 적용

측정방법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신규지표)

- 적기 접종건수: 예방접종 권장 접종시기에 접종한 건수
- 당해연도 출생아 대상 접종건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반으로 당해연도 출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체 접종건수

※ 피접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

※ 당해연도 6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12월31일 이전에 접종시기가 도래하는 횟수만 적용

출생월	예방접종 내용	접종횟수
'12.12월~'13.5월	BCG(1회), HepB(3회), Hib(3회), DTaP(3회), IPV(3회)	13회
'13.6월~'13.7월	BCG(1회), HepB(2회), Hib(2회), DTaP(2회), IPV(2회)	9회
'13.8월~'13.9월	BCG(1회), HepB(2회), Hib(1회), DTaP(1회), IPV(1회)	6회
'13.10월	BCG(1회), HepB(2회)	3회
'13.11월	BCG(1회), HepB(1회)	2회

※ Hib 백신 중 PRP-OMP로 1차, 2차 접종완료시 기초 3회 적용

※ DTaP-IPV 콤보백신 접종은 DTaP와 IPV 동시 접종과 동일 횟수 적용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 실적

○ **평가기준일** : 2013. 12. 31

자료제출서식

㉮ 영유아 예방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예방접종 건수(A)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B)	(A/B)×100
	계(A)=(①+②)	보건소 접종건수(①)	민간의료기관 접종건수(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단위 : 건, %)

구 분	예방접종 적기접종 건수(A)			당해년도 적기접종 건수(B)	(A/B)×100
	계(A)=(①+②)	보건소 적기 접종건수(①)	민간의료기관 적기 접종건수(②)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영유아 예방접종률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및 안전행정부 자료 활용)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증빙자료 불필요(질병관리본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시군구별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대상연령별 접종건수 현황(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주민 전산자료) ㉯ 당해연도 적기접종 현황(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주민 전산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043-719-7368, E-mail : donggli@cdc.go.kr)

충청북도 보건업무 관리자 현황

충청북도 보건업무 관리자 현황

(2014.1.17일 현재)

소 속	과 · 소장(직급)		팀장, 담당(직급)		행정	휴 대 폰	전화(FAX)
도 보건정책과	과장 이주원 (기술서기관) ☎ 3110 010-9577-2933		보건정책팀장	김양수(보5)	3111	010-5874-8169	220-3119 220-3139
			건강증진팀장	이승우(보5)	3121	010-6733-9077	
			의료관리팀장	김용호(보5)	3131	010-4843-4751	
			국제의료관광팀장	김대근(보5)	3151	010-9288-0474	
			질병관리팀장	김교영(간5)	3141	010-8635-1219	
상당구 보건소 (행711) (일200)	소장 김은하(간5) ☎4000 017-426-9900		보건행정담당	심명희(보6)	4011	017-435-5279	200-4079
			의약관리담당	이진숙(간6)	4031	010-2030-7410	
			감염병관리담당	김현숙(보6)	4035	010-6656-0202	
			가족보건담당	김종성(보6)	4045	010-5605-6960	
			건강증진담당	김혜련(간6)	4055	010-5492-4356	
흥덕구 보건소 (행711) (일200)	소장 노용호 (기술서기관) ☎ 4102 010-5466-1053	보건사업과장 이철수(보5) ☎ 4110 010-7280-6650	보건행정담당	김병성(의6)	4111	010-3481-2022	200-4179
			의약관리담당	전소연(보6)	4125	010-3280-2703	
			감염병관리담당	이영란(간6)	4131	010-3436-1571	
			가족보건담당	이민주(간6)	4145	010-3399-7160	
			건강증진담당	최시경(의6)	4161	010-9487-6559	
충주시 보건소 (행712) (일850)	소장 홍현설 (기술서기관) ☎ 3400 010-6353-4959	보건위생과장 권오동(행5) ☎ 3401 010-7700-5973	보건행정팀장	박종환(행6)	3410	010-9663-6608	850-3409
			예방의약팀장	송문순(간6)	3420	010-4558-3989	
			식품위생팀장	김성영(보6)	3440	010-8844-2628	
			위생지도팀장	류정수(보6)	3450	010-5448-9897	
			공중위생팀장	장선옥(보6)	3460	010-2044-2194	
		건강증진과장 박상숙(간5) ☎ 3501 010-8841-7015	지역보건팀장	홍임숙(간6)	3510	010-3733-5983	850-3509
			건강증진팀장	우시연(의6)	3520	010-2281-6907	
			모자보건팀장	이을순(간6)	3530	010-5241-2343	
			검진팀장	정란숙(간6)	3540	010-6655-3506	
			방문보건팀장	정금자(보6)	3550	010-9409-3208	
제천시 보건소 (행713) (일641)	소장 이국환 (기술서기관) ☎ 3010 010-3073-5712	건강증진과장 박혜숙(보5) ☎ 3020 010-7186-1376	보건행정팀장	윤용권(의6)	3031	010-8845-7963	641-3029
			한방건강팀장	김용기(보6)	3041	010-8863-8535	
			방문보건팀장	김명순(보6)	3051	010-4284-2512	
		보건위생과장 조종휘(보5) ☎ 3150 010-5492-3027	예방의약팀장	유재숙(의6)	3161	010-5145-9097	641-3159
			시민보건팀장	정현숙(의6)	3171	010-4038-8535	
			위생관리팀장	윤용태(행6)	3181	010-5492-5478	
청원군 북부 보건소 (행714) (일251)	소장 여운복 (기술서기관) ☎ 6650 010-8715-1360		보건행정담당	이종례(행6)	6651	010-6434-0601	251-6670
			가족보건담당	김종숙(보6)	6661	011-9841-5021	
			감염병관리담당	방영란(의6)	6671	010-4172-8546	
			의약관리담당	황의남(보6)	6681	011-9846-3023	
			건강증진담당	반손환(간6)	6691	010-8848-0964	
청원군 남부 보건소 (행714) (일251)	소장 홍순후 (보건사무관) ☎ 4100 010-5438-4069		보건행정담당	박경용(의6)	4101	010-8647-3406	251-4786
			가족보건담당	김윤정(간6)	4121	010-2518-2681	
			예방의약담당	장정수(의6)	4131	010-8836-6615	
			건강증진담당	박연숙(보6)	4141	010-3456-0339	
			식품안전담당	윤선암(보6)	4171	010-9680-5181	

소 속	과 · 소장(직급)	팀장, 담당(직급)	행정	휴 대 폰	전화(FAX)
보은군 보건소 (행715) (일540)	소장 이종란 (기술서기관) ☎ 5600 010-3428-3129	보건행정계장 윤광혼(보6)	5601	010-4403-2458	544-2574
		예방의약계장 이양순(의6)	5611	011-9841-5046	
		건강증진계장 박성림(보6)	5621	010-6486-4161	
		진료계장 김기혜(의6)	5631	010-9518-1040	
		방문보건계장 박종인(간6)	5651	010-8719-1058	
옥천군 보건소 (행716) (일730)	소장 권오석(보5) ☎ 2100 010-9150-6230	보건행정팀장 황수섭(행6)	2101	010-4468-5263	730-2109
		예방의약팀장 이경숙(의6)	2111	010-3478-8879	
		건강증진팀장 김옥년(간6)	2121	010-5041-7108	
		방문보건팀장 홍진숙(의6)	2131	010-3457-1416	
		진료팀장 이소나(간6)	2141	010-9818-2739	
영동군 보건소 (행717) (일740)	소장 정현순(보5) ☎ 5580 010-7280-5110	보건행정담당 나은규(간6)	5581	010-4396-0564	742-4000
		예방의약담당 송은숙(보6)	5591	010-3276-2878	
		주민건강담당 이은미(의6)	5601	010-3252-3977	
		방문보건담당 정문희(간6)	5611	010-6326-8201	
		진료담당 박인순(보6)	5621	010-5120-0576	
		출산정책담당 박혜경(의6)	5921	010-9028-0071	
증평군 보건소 (행718) (일835)	소장 채영수(보5) ☎ 4201 011-9058-9750	보건행정팀장 연영미(보6)	4211	010-3090-7821	835-3095
		예방의약팀장 김동희(보6)	4221	010-9655-8892	
		건강증진팀장 박규희(식6)	4231	010-5498-3571	
		보건진료팀장 윤서영(의6)	4261	010-5611-2914	
		방문보건팀장 조행남(의6)	4241	010-5487-5235	
진천군 보건소 (행719) (일539)	소장 이재은 (기술서기관) ☎ 7300 010-3474-5267	보건행정팀장 김의년(행6)	7301	010-2435-8281	537-0751
		예방의약팀장 박풍남(보6)	7321	010-2336-1152	
		건강관리팀장 김민기(보6)	7341	010-3458-3908	
		방문보건팀장 송석호(사6)	7371	011-468-7518	
		진료팀장 김순성(보6)	7401	011-9845-2088	
괴산군 보건소 (행720) (일830)	소장 최창훈(보5) ☎ 2300 010-6471-5781	보건행정담당 김금희(간6)	2301	010-3028-1312	832-8927
		예방의약담당 김미경(의6)	2311	010-8446-4703	
		건강관리담당 이영남(보6)	2321	010-5467-2738	
		진료담당 김영숙(보6)	2341	010-5463-1003	
		방문보건담당 하지미(보6)	2351	010-8463-6119	
음성군 보건소 (행721) (일871)	소장 김주오(간5) ☎ 2400 010-6433-9539	보건행정팀장 김홍범(보6)	2401	010-5487-2195	871-2409
		예방의약팀장 신연식(보6)	2411	010-9210-5619	
		보건진료팀장 이인숙(보6)	2421	010-5466-4198	
		방문보건팀장 이순옥(보6)	2431	010-2128-2688	
		건강증진팀장 정춘이(보6)	2441	010-9424-0631	
단양군 보건소 (행722) (일420)	소장 홍민우 (기술서기관) ☎ 3200 010-9877-1423	보건행정팀장 류 황(행6)	3201	010-8910-5305	420-3209
		예방의약팀장 이진숙(의6)	3211	010-9922-1898	
		건강증진팀장 강규원(간6)	3221	010-2736-8910	
		보건진료팀장 조명자(보6)	3231	010-6717-3743	
		방문보건팀장 임은주(간6)	3241	010-7372-1989	

※ 직급에서 보-보건, 간-간호, 의-의료기술, 행-행정, 사-사회복지

충청북도 보건기관 주소록

충청북도 보건기관 주소록

(2013.12.31일 현재)

1. 도 보건정책과 및 보건소

연번	도, 시군	전 화	팩 스	우편번호	주 소
1	보건정책과	220-3112	220-3119 220-3139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2	청주시 상당	200-4012	200-4079	360-1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72번길 21(수동)
3	청주시 흥덕	200-4112	200-4179	361-7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사직동)
4	충주시	850-3411	850-3409	380-700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5	제천시	641-3032	641-3029	390-897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6	청원군	251-4102	251-4786	363-844	충북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480
7	보은군	540-5602	544-2574	376-803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07
8	옥천군	730-2102	730-2109	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양로8길 10
9	영동군	740-5582	742-4000	370-805	충북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10	증평군	835-4212	835-3095	368-902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11	진천군	539-7302	537-0751	365-80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 1길 11-8
12	괴산군	830-2302	832-8927	367-805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13	음성군	871-2402	871-2409	369-807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9
14	단양군	420-3202	420-3209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1로 17

2. 보건지소

연번	시군	지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1	청주시	용암	200-4775	360-8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17(용암동)
2	청주시	강서	200-4571	361-3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46(비하동)
3	충주시	주덕	850-4471	380-884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9
4	충주시	살미	850-4481	380-933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양지말길 41
5	충주시	수안보	850-4493	380-943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9-9
6	충주시	대소원	850-4901	380-872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1길 29
7	충주시	신니	850-4913	380-891	충북 충주시 신니면 안용원로 7
8	충주시	노은	850-4923	380-911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9	충주시	앙성	850-4932	380-865	충북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28
10	충주시	가금	850-4941	380-921	충북 충주시 가금면 중앙탑길 247
11	충주시	금가	850-4951	380-821	충북 충주시 금가면 강수로 331
12	충주시	동량	850-4961	380-814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돈안길 1
13	충주시	산척	850-4971	380-832	충북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36
14	충주시	엄정	850-4983	380-843	충북 충주시 엄정면 자바위길 4-2
15	충주시	소태	850-4991	380-852	충북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16	제천시	봉양	647-4198	390-875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8길 3-1
17	제천시	금성	652-6679	390-821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02
18	제천시	청풍	648-0013	390-832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56길 23
19	제천시	수산	648-1641	390-843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2길 102-26
20	제천시	덕산	642-3067	390-851	충북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80
21	제천시	한수	641-3120	390-862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8길 23
22	제천시	백운	652-6305	390-882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3
23	제천시	송학	644-1695	390-813	충북 제천시 송학면 서곡포전로2길 3
24	청원군	내수	251-4201	363-934	충북 청원군 내수3길 49
25	청원군	오창	251-4206	363-882	충북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26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251-4211	363-885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0
27	청원군	오송	251-4261	363-954	충북 청원군 오송읍 가로수로 174

2. 보건지소

연번	시군	지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28	청원군	오송과학단지	251-4751	363-951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3로 67
29	청원군	낭성	251-4216	363-861	충북 청원군 낭성면 낭성시내길 25
30	청원군	미원	251-4221	363-874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19-21
31	청원군	가덕	251-4226	363-851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보청대로 4646
32	청원군	남이	251-4236	363-813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길 7-12
33	청원군	문의	251-4241	363-832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시내1길 8-15
34	청원군	현도	251-4248	363-821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1길 9
35	청원군	강내	251-4257	363-894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433
36	청원군	옥산	251-4266	363-911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옥산시내1길 45-9
37	청원군	북이	251-4273	363-923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대석성로 10
38	보은군	내북	542-0379	376-812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6239
39	보은군	동부통합	542-2697	376-853	충북 마로면 관기송현로 65
40	보은군	산외	542-4075	376-872	충북 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19-5
41	보은군	삼승	542-6462	376-821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로1길39
42	보은군	서부통합	542-9010	376-893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48
43	보은군	속리산	543-3943	376-863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연송로258-6
44	보은군	탄부	542-7613	376-831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장3길7
45	옥천군	동이	730-2020	373-831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길14
46	옥천군	안남	730-2030	373-822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46
47	옥천군	안내	730-2040	373-813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66
48	옥천군	청성	730-2050	373-881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49
49	옥천군	청산	730-2060	373-874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32-15
50	옥천군	이원	730-2070	373-861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4길 17-1
51	옥천군	군서	730-2080	373-841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540
52	옥천군	군북	730-2090	373-853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8
53	영동군	용산	742-9587	370-91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85
54	영동군	황간	742-4921	370-863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2길 11

2. 보건지소

연번	시군	지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55	영동군	추풍령	742-3371	370-893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 4길 22
56	영동군	매곡	743-2018	370-872	충북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594-2
57	영동군	상촌	743-3521	370-882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4길 9
58	영동군	양강	744-4211	370-811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로 19
59	영동군	용화	743-7017	370-842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0
60	영동군	학산	743-5758	370-821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68
61	영동군	양산	743-8805	370-831	충북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
62	영동군	심천	742-6069	370-854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88-1
63	증평군	도안	835-3591	368-812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65
64	진천군	덕산	539-7430	365-843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금로 829
65	진천군	초평	539-7440	365-853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45-6
66	진천군	문백	539-7450	365-863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1길 21
67	진천군	백곡	539-7460	365-812	충북 진천군 백곡면 장터길 15-2
68	진천군	이월	539-7470	365-822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2길 36-9
69	진천군	광혜원	539-7480	365-833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
70	괴산군	감물	833-9303	367-891	충북 괴산군 감물면 충민로신대길 13
71	괴산군	장연	832-7302	367-872	충북 괴산군 장연면 마선로오가3길 7-16
72	괴산군	연풍	833-5304	367-882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향교로 51
73	괴산군	칠성	832-5303	367-862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2
74	괴산군	문광	833-1539	367-851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483
75	괴산군	청천	832-4304	367-840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관로 473
76	괴산군	청안	836-9303	367-831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21
77	괴산군	사리	836-7303	367-822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355
78	괴산군	소수	832-8302	367-922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157-6
79	괴산군	불정	833-7305	367-911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562
80	괴산군	송면	833-8302	367-847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관로 473
81	괴산군	부흥	832-9302	367-834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평로 451

2. 보건지소

연번	시군	지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82	음성군	금왕	878-1893	369-904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21
83	음성군	소이	872-5170	369-872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409
84	음성군	원남	872-7020	369-862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 19
85	음성군	맹동	878-9043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86	음성군	대소	877-3920	369-824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57-16
87	음성군	삼성	878-5021	369-831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30번길 8
88	음성군	생극	878-3039	369-841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1626번길 19
89	음성군	감곡	882-9696	369-851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24번길 15
90	단양군	매포	420-3284	395-904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3길 3
91	단양군	단성	420-3288	395-862	충북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52-1
92	단양군	대강	420-3294	395-813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단양로176
93	단양군	가곡	420-3297	395-821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1길 9-2
94	단양군	영춘	420-3375	395-832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39
95	단양군	어상천	420-3359	395-843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매포어상천로 1257-16
96	단양군	적성	420-3364	395-852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 금수산로 957-2

3. 보건진료소

연번	시군	진료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1	청주시	오근장	200-7823	360-567	충북 청주시 상당구 팔결로 121-1(오동동)
2	청주시	월오	200-7824	360-18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75(월오동)
3	충주시	장록	846-2374	380-881	충북 충주시 주덕읍 장록당우길 304
4	충주시	공이	856-9241	380-931	충북 충주시 살미면 공이동길 508-22
5	충주시	문산	848-7221	380-932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산길 29
6	충주시	대사	846-2934	380-942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한절2길 6
7	충주시	매현	856-3451	380-874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3
8	충주시	동락	857-2849	380-892	충북 충주시 신니면 동락길 49
9	충주시	안락	853-9857	380-912	충북 충주시 노은면 대덕길 26
10	충주시	수룡	853-9243	380-913	충북 충주시 노은면 원모롱이길 19
11	충주시	앙암	857-2144	380-861	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679
12	충주시	가흥	854-3784	380-921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말고개길 2
13	충주시	오석	848-2012	380-823	충북 충주시 금가면 김생로 750
14	충주시	개천안	851-2938	380-813	충북 충주시 동량면 호반로 371-14
15	충주시	대전	851-2939	380-812	충북 충주시 동량면 내동1길 12
16	충주시	명서	852-5646	380-833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인등로 585-6
17	충주시	추평	857-3243	380-841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가촌리길 65
18	충주시	복탄	855-8857	380-852	충북 충주시 소태면 덕은로 756
19	제천시	옥전	653-2716	390-873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34
20	제천시	공전	651-2715	390-871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4길 18
21	제천시	마곡	651-2709	390-872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국사봉로7길 15
22	제천시	양화	651-3713	390-822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27길 9
23	제천시	장선	651-0967	390-824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인등로 1497
24	제천시	도전	648-0969	390-843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로 276
25	제천시	대전	651-3712	390-841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인삼로 531
26	제천시	도기	651-2711	390-852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기길 49
27	제천시	월악	653-0970	390-851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4길 31

3. 보건진료소

연번	시군	진료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28	제천시	화당	653-0887	390-881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2길 15
29	제천시	송한	651-2714	390-812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로2길 6
30	청원군	탑리	251-4777	363-886	충북 청원군 오창읍 탑리길 21-4
31	청원군	가좌	251-4778	363-88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가좌1길 47
32	청원군	유리	251-4779	363-887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일신길 9
33	청원군	공북	251-4773	363-951	충북 청원군 오송읍 정중연제로 641
34	청원군	갈산	251-4760	363-861	충북 청원군 남성면 갈산무성길 5
35	청원군	금관	251-4761	363-872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계원로 617
36	청원군	기암	251-4762	363-870	충북 청원군 미원면 터기암길 6-42
37	청원군	용곡	251-4763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472
38	청원군	운교	251-4764	363-873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운교로 585
39	청원군	행정	251-4765	363-852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장인차로 295-7
40	청원군	상야	251-4766	363-853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야길 30
41	청원군	병암	251-4764	363-853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3길 11-6
42	청원군	구미	251-4768	363-812	충북 청원군 남이면 저산척북로 300-19
43	청원군	두모	251-4769	363-833	충북 청원군 문의면 두모1길 13-20
44	청원군	소전	221-7040	363-834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전길 1
45	청원군	하석	251-4771	363-821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길 7
46	청원군	태성	251-4772	363-893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2길 9-39
47	청원군	금계	251-4774	363-912	충북 청원군 옥산면 금계2길 8
48	청원군	소로	251-4775	363-911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1길 68
49	청원군	호죽	251-4776	363-912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가좌로 432-4
50	청원군	석성	251-4780	363-923	충북 청원군 북이면 용계1길 77
51	청원군	영하	251-4781	363-921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영하길 5
52	청원군	추학	251-4782	363-922	충북 청원군 북이면 용계내추로 362
53	보은군	강신	542-2035	376-802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1길 34
54	보은군	고석	542-9515	376-892	충북 보은군 회인면 고석길 6

3. 보건진료소

연번	시군	진료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55	보은군	기대	542-3129	376-853	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2길 23
56	보은군	동정	542-5558	376-882	충북 보은군 수한면 안내수한로 1077
57	보은군	매화	542-8076	376-830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고승로 294
58	보은군	묘서	544-2092	376-881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광촌길 3
59	보은군	북암	542-4684	376-862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1길 18-11
60	보은군	산대	542-4271	376-871	충북 보은군 산외면 내북산외로 788-6
61	보은군	세중	542-3740	376-851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2길 34-1
62	보은군	송죽	542-7191	376-823	충북 보은군 삼승면 거현송죽로 451
63	보은군	신궁	542-0838	376-811	충북 보은군 내북면 산척상궁로 633-3
64	보은군	신대	542-9510	376-893	충북 보은군 회인면 신대2길 3
65	보은군	장갑	542-4797	376-873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외로 691-4
66	보은군	장안	542-6108	376-842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7-2
67	보은군	중초	542-1675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27-23
68	옥천군	석탄	733-3820	373-831	충북 옥천군 동이면 안터2길8
69	옥천군	우산	732-3761	373-832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694
70	옥천군	지수	731-8135	373-822	충북 옥천군 안남면 안남로796
71	옥천군	동대	732-6630	373-812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보은로226
72	옥천군	도곡	732-9603	373-883	충북 옥천군 청성면 남부로3180
73	옥천군	화성	732-9593	373-881	충북 옥천군 청성면 한두레로17
74	옥천군	묘금	732-9592	373-882	충북 옥천군 청성면 묘금3길29
75	옥천군	의동	732-8937	373-87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의지길245
76	옥천군	신매	732-9594	373-872	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길18
77	옥천군	예곡	732-8821	373-873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2길7
78	옥천군	원동	732-3924	373-863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3길9
79	옥천군	현리	732-2743	373-864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3길6-4
80	옥천군	개심	732-3923	373-862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378
81	옥천군	은행	732-4060	373-842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은행1길25

3. 보건진료소

연번	시군	진료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82	옥천군	대정	732-5753	373-851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733
83	옥천군	국원	732-5716	373-852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길5
84	옥천군	증약	732-5005	373-851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1길10-5
85	영동군	화신	743-0657	370-804	충북 영동군 영동읍 당곡로 13
86	영동군	심원	744-4584	370-806	충북 영동군 영동읍 심원회포로 321
87	영동군	부상	744-3590	370-911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1길 17
88	영동군	매금	742-8164	370-913	충북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402
89	영동군	용암	742-9060	370-862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하용암2길 4
90	영동군	신안	742-3318	370-892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486
91	영동군	어촌	743-2519	370-871	충북 영동군 매곡면 괘방령로 555
92	영동군	궁촌	743-3523	370-882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촌로 834
93	영동군	하도대	743-5233	370-881	충북 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2691
94	영동군	물한	745-0030	370-883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로 1105
95	영동군	남전	744-3011	370-813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272
96	영동군	조동	745-1228	370-841	충북 영동군 용화면 민주지산로 781
97	영동군	범화	744-1279	370-821	충북 영동군 학산면 용화양강로 1491
98	영동군	지내	745-9388	370-822	충북 영동군 학산면 넘벌2길 3
99	영동군	누교	743-8833	370-832	충북 영동군 양산면 천태산로 362-1
100	영동군	축산	743-8834	370-831	충북 영동군 양산면 죽산3길 19-4
10	영동군	기호	744-8270	370-852	충북 영동군 양산심천로 803
102	증평군	남차	835-3897	368-902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1147
103	진천군	사석	539-7491	365-805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95-1
104	진천군	선옥	539-7492	365-841	충북 진천군 덕산면 기전2길 7
105	진천군	오갑	539-7493	365-853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영주원1길 22-12
106	진천군	용산	838-3001	365-852	충북 진천군 초평면 원댕이길 10
107	진천군	사양	539-7495	365-862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4-5
108	진천군	용덕	539-7496	365-812	충북 진천군 백곡면 용진길 93

3. 보건진료소

연번	시군	진료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109	진천군	신월	539-7497	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정길 55
110	괴산군	신기	832-3716	367-803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관동로 533-3
111	괴산군	이담	833-7184	367-892	충북 괴산군 감물면 잉어수2길 3
112	괴산군	방곡	832-7304	367-871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 1580
113	괴산군	신대	832-6281	367-872	충북 괴산군 장연면 담바우길 47
114	괴산군	내응	833-5458	367-881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2길 29
115	괴산군	외사	832-5836	367-863	충북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5길 26
116	괴산군	지경	832-9289	367-845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2567
117	괴산군	대후	832-4679	367-842	충북 괴산군 청천면 대티길 290
118	괴산군	덕평	833-6166	367-842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문로덕평길 23
119	괴산군	신월	833-1092	367-841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3길 5
120	괴산군	운곡	832-9745	367-832	충북 괴산군 청안면 질마로 902-5
121	괴산군	중흥	836-7269	367-821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로 4길 16-2
122	괴산군	강천	833-3583	367-823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921
123	괴산군	뭉촌	832-8384	367-921	충북 괴산군 소수면 원소로뭉촌1길 9
124	괴산군	세평	833-7293	367-913	충북 괴산군 불정면 관동로세평4길 13
125	괴산군	삼방	833-4137	367-912	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5
126	괴산군	추산	833-4133	367-811	충북 괴산군 불정면 동추산1길 12
127	음성군	삼생	873-4822	369-802	충북 음성군 음성읍 덕생로 335
128	음성군	유포	881-1723	369-906	충북 음성군 금왕읍 버들개길 59-4
129	음성군	내곡	881-1724	369-902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434번길 66
130	음성군	충도	873-5833	369-872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로295번길 21
131	음성군	주봉	872-7634	369-863	충북 음성군 원남면 주봉로 13
132	음성군	조촌	872-7635	369-862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417번길 15
133	음성군	용촌	881-9621	369-812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길 105
134	음성군	봉현	881-9621	369-812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로 126
135	음성군	두성	882-9622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골길 142

3. 보건진료소

연번	시군	진료소명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136	음성군	부윤	881-7517	369-823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30번길 24
137	음성군	내산	881-8093	369-821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1042번길 1
138	음성군	선정	881-6261	369-832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길 206
139	음성군	능산	878-6190	369-831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율로 389번길 45-6
140	음성군	상곡	881-6265	369-834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127번길 15
141	음성군	차평	881-3930	369-843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868-5
142	음성군	관성	881-3929	369-841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상로 295번길 39
143	음성군	오궁	881-0999	369-852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길 5번길 8-4
144	음성군	상평	878-2872	369-853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감노로 156-12
145	단양군	가대	421-1519	395-821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궁골1길 20
146	단양군	가산	422-1492	395-861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3길 10
147	단양군	각기	422-5166	395-851	충북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201
148	단양군	고평	422-1491	395-862	충북 단양군 단성면 설마로 154
149	단양군	노동	422-2911	395-802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 1-17
150	단양군	대대	422-8475	395-822	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469-17
151	단양군	덕문곡	423-6203	395-842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166
152	단양군	별방	422-8787	395-834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39-5
153	단양군	보발	422-8189	395-823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2
154	단양군	석교	423-6607	395-841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길 28-3
155	단양군	여천	422-8213	395-821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1길 20
156	단양군	의풍	422-6867	395-837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5길 52
157	단양군	장정	422-1245	395-812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길 11
158	단양군	황정	542-9515	395-813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1길 36-6

2014 충청북도 보건사업계획

2014년 2월 13일 인쇄
2014년 2월 17일 발행
발 행 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인 쇄 처 : 영광인쇄소 Tel) 043-252-8447